



**한-미, 한-중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개요**

**2015.10.14.
법무법인 다래**

요 약 문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 관리자 등이 합리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성과물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지침서가 되는 가이드라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 경쟁의 가속화와 과학기술의 융합화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 대응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또는 협력연구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히 협력 대상으로서 가장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미국·중국 두 나라의 법률 및 제도, 문화적 차이는 국제공동연구의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분쟁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연구자 등은 전문가의 부재, 전문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중국의 국제공동연구 계약 사례,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률을 분석하였다. 계약서라는 분석 대상의 제한적인 특성으로 인한 연구 수행의 제약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 국가가 한국뿐만 아니라 타국과 체결한 계약서를 추가 수집하였으며, 국제공동연구 계약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자 기관(대학 또는 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표준계약서 또한 수집하여 함께 분석하였다.

법률 분석의 경우,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이 공동연구 규정에 근간을 둘 것으로 판단하여, ‘국제’라는 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한·미·중의 공동연구 관련 규정을 모두 수집하였다. 그 후, 국제공동연구 관련 주요 쟁점 이슈가 되는 연구비용·성과물의 소유·활용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유무 현황 및 규정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국·중국과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국제공동연구계약서 샘플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특히 가이드라인에서는 국내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들이 국제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가정하여 선별적으로 계약 조항을 선택할 수 있는 조항들을 예시함으로써 본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가능한 쉽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결과물인 ‘한-미, 한-중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은 경제 및 기술협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미국·중국과 합리적인 협약을 체결하는 데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국내 연구개발 주체의 권리 및 성과물을 보호·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공동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향후 지속적인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9
2. 연구의 내용 15
3. 연구의 방법 19

II. 국제공동연구의 개요

1. 국제공동연구 정의 25
2. 국제공동연구 유형 26
3. 국제공동연구 현황 29
4. 국제공동연구 성과물 관리 현황 34
5. 주요 국가의 국제공동연구 현황 및 관리제도 38

III. 국제공동연구 계약 사례 분석

1. 국제공동연구 계약 사례 분석의 필요성 43
2. 국제공동연구 계약 사례 분석 내용 44

IV. 국제공동연구 법률 분석

1. 국가별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률 및 제도 목록 ... 163
2.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률 비교 분석
(비용·소유·활용 중심) 165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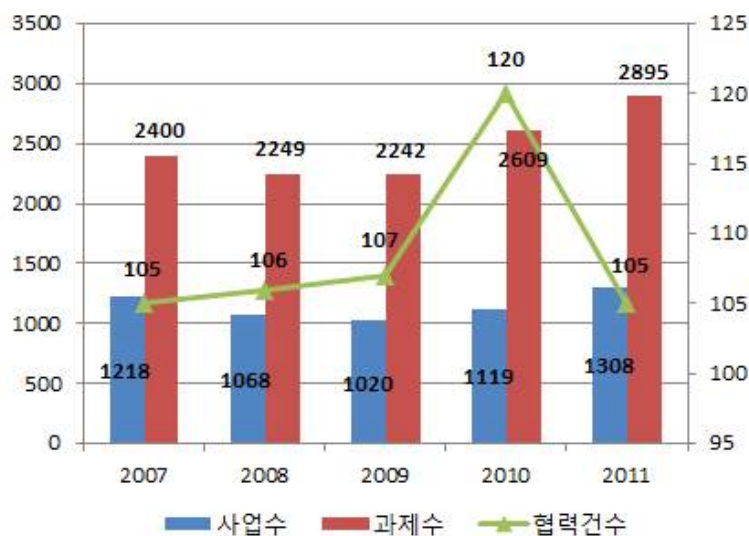
가. 연구의 필요성

1) 국제공동연구의 수요 증가

첨단기술의 개발속도 가속화 및 기술 또는 제품 수명주기의 단축으로 기술경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으며, 에너지 보안 및 기후변화와 같이 국제적 차원의 기술개발이나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복잡화, 융합화, 대형화로 인해 기술개발 비용은 하나의 기관 또는 국가가 단독으로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 역시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성공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위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로 둘이상의 기업, 학교, 연구소들이 모여 각자의 역량을 투입하여 공동의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각자의 기술력을 보완하거나 기술개발 비용을 줄임에 따라 위험을 분산시키고, 연구 성공률을 높이는 ‘공동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다. 이러한 공동연구는 국가 내에서만 아니라 특히 국가 간에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들은 과학기술 정책에서 국제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표.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연도별 추진현황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201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세계적인 공동연구의 활성화 흐름에 맞추어 국제공동연구의 양적·질적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위의 자료를 보면 2011년 기준 협력건수는 일부 감소했지만, 과제 및 사업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국제협력 상위 5개국 추이

2008			2009			2010		
국가	건수	비중(%)	국가	건수	비중(%)	국가	건수	비중(%)
미국	737	32.8	미국	761	33.9	미국	851	32.6
일본	282	12.5	일본	337	15.0	일본	379	14.5
중국	130	5.8	중국	159	7.1	중국	168	6.4
독일	120	5.3	독일	121	5.4	프랑스	136	5.2
영국	103	4.6	프랑스	97	4.3	독일	107	4.1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 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 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2013

우리나라의 연구기관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가의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이 그 뒤를 잇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3개국의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는 것으로 보아 상위 3개국에 공동연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

오랜 기간 기술 및 경제 협력대상 국가였던 미국과의 공동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최근에 빠른 기술 성장이 두드러지는 중국과의 공동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KIRD, 국제공동연구계약 실무과정, 2012

2) 국제공동연구 관련 주요 이슈 발생

위와 같이 국제공동연구의 건수와 그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련 법 제도의 부재 및 미비로 인하여 국제공동연구 성과물의 미흡한 관리, 저조한 활용 등 개선되어야 할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주요 이슈 및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국제공동연구 관련 주요 이슈

표. 공동연구계약 단계별 주요 확인사항

구 분	확인사항
MOU/LOI	- 법적 구속력 - 계약 사항 변경 가부 - 교섭결렬시 책임(준거법) 등
NDA	- 기술 개요의 개시 - 결렬시 분쟁방지 조치(Gatekeeper) - 비밀유지의무의 존속기간 - 분쟁발생시의 해결방법 등
연구개발 또는 기술이전계약	- 공정거래법상 규제 - 기술의 테스트 및 평가 - 기술개발 과정 중 발생한 성과물에 대한 처리 등

출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주요 쟁점, 2005

표. 국제공동연구 협상 시 주요 쟁점 사항

구 분	쟁점 사항
연구 비용	- 공동연구 비용 부담 주체 및 비율 - 특허비 등의 부담
연구수행 관련 사항	- 공동연구팀의 연구업무분담 체계, 연구원 편성 등 - 공동연구 성과물 지식재산권의 귀속·지분·비용부담·권리 침해 시의 조치·단독권리의 취급
연구성과의 귀속	- 연구성과의 귀속기준, 지분처분 금지 등 ※ 국가별로 공유의 법률관계, 직무발명의 귀속 주체에 차이가 있음
연구성과의 실시	- 주체 간의 이익 공정배분의 문제 - 불실시에 따른 보상문제 - 공동연구 성과물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증 및 손해배상
연구성과의 보호	- 기술·노하우의 비밀유지/타목적 사용 금지에 대한 우려 - 학회 등 발표 여부 - 동일 주체의 연구제한 등

출처: 코레일 연구원, 국제 공동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12²⁾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당사국간의 법령 및 법체계의 차이로 인해 많은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연구 성과물의 귀속·활용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국제공동연구 관련 애로사항

우리나라는 ‘국제과학기술협력협정(대통령령)’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같은 위임규정에 국제공동연구의 관리를 일임하고 있어, 국제공동연구를 단독으로 다루고, 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일화된 법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국제공동연구계약 체결시 참고할 가이드라인 역시 2014년에 특허청에서 발간한 한국-영국 국제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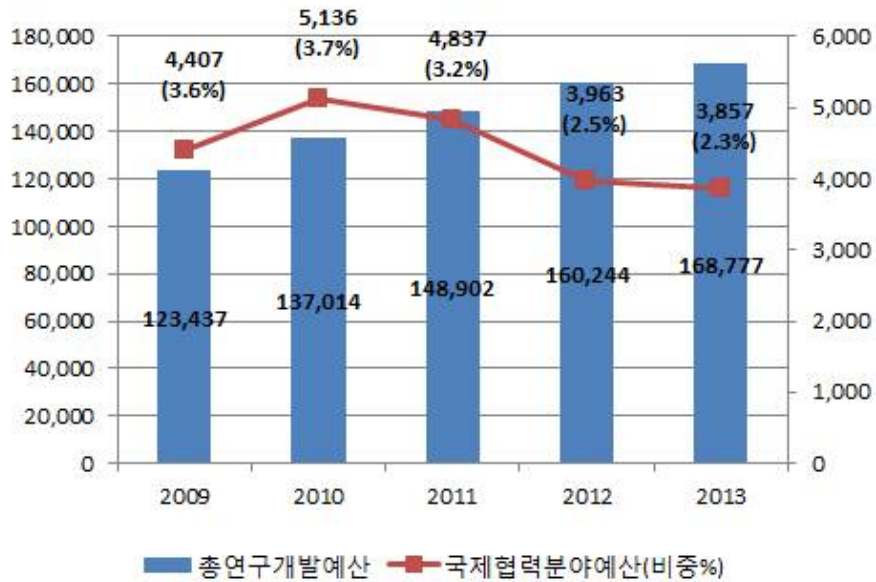
내부적으로 국제공동연구 관련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문제가 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국가 간 법률 및 제도, 문화적 차이가 국제기술 협력 시 장애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가 간의 차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협상 및 계약 단계에서의 원만한 진행이 사실상 어려우며, 추후 계약 내용의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분쟁이 발생 할 위험이 높다.

예를 들어 국내 규정과 달리 미국에서는 발명자에 오류가 있을 경우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있으며, 특허권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실시권 허락이 가능하다. 또한, 미국의 수출관리규칙에 의하여 공동연구 성과물인 기술이 관리대상기술에 해당되면 연구성과를 이전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2) 본문 13페이지, ‘<표2-4> 국제공동연구 협상의 주요 쟁점사항’ 수정하였음

3) 국제공동연구 실적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표. (R&D예산) 과학기술 국제협력 예산현황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ICT 기반 국제협력 종합계획(안), 2014

정부에서는 R&D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R&D 사업에 매년 약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일반 R&D와 비교하여 사업화 및 연구실적은 미흡한 상황(※ 사업화 실적: 국제공동연구 약 25%, 일반 약 40%)³⁾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법제 미비, 가이드라인의 부재 또는 국가간의 차이와 같은 장애요인이나 제한적인 환경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연구생산성 저하를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제협력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해 현장에서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발전방안, 2014

나. 연구의 목표

본 연구는 국제공동연구수행자 또는 국제공동연구를 추진·관리하는 연구관리자 등이 미국, 중국과의 국제공동연구 현황, 법률, 제도적 환경 등을 이해하여, 해당국들과 국제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애로사항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결과물인 ‘한-미, 한-중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이 경제 및 기술협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미국·중국과 합리적인 협약을 체결하는 데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개발 주체 및 성과물을 보호함으로써 국제공동연구의 실적 향상을 도모하고, 향후 지속적인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분석을 수행하였다.



가. 국제공동연구 사례 수집 및 분석

1) 국제공동연구 관련 선행자료 수집 및 분석

국제공동연구 사례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기본이 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개념을 정의하고, 유형별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관련 문헌자료로부터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간에 주로 수행되는 국제공동연구의 유형을 확인하였으며, 연구참여 주체 유형별로 연구비용 부담, 연구 결과물의 소유·활용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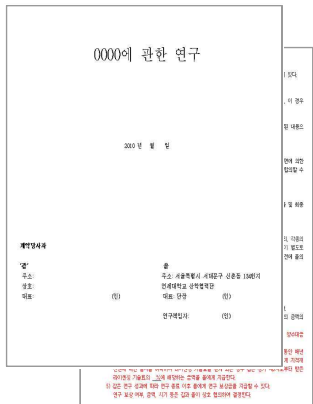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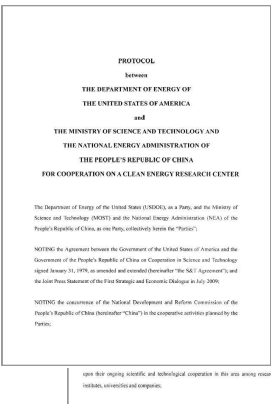

표. 국가별 공동연구 참여형태

국가명	공동연구 참여형태						
	합계	국제협약	기술연수	해외파견 (3개월 이상)	외국인 연구자 유치	위탁연구	정보교환
미국	1,003	132	22	255	384	119	91
일본	351	45	15	78	165	20	28
중국	186	37	3	39	56	18	33

출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2011

위와 같은 선행자료 검토 결과는 본 연구의 핵심 분석 대상인 국제공동연구의 실제 계약서 및 표준모델 검토에 있어 분석 기준을 설정 및 재확인하고, 가이드라인의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서 활용되었다.

2)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및 표준 계약서(모델)⁴⁾ 수집 및 분석

한국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및 표준 계약서	미국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및 표준 계약서	중국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및 표준 계약서
		

국제공동연구 수행자 및 관리자 등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에 실제 사용된 계약서를 수집하였다. 특히, 수집대상을 한-미, 한-중간에 수행된 계약서에 한정하지 않고, 한국, 미국, 중국이 연구대상 이외의 국가들과 수행한 국제공동연구의 계약서도 추가로 수집하였다.

또한, 당사자 간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계약서뿐만 아니라, 대학교나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계약 체결 시 활용하고 있는 표준 계약서(모델)도 수집·분석하였다.

이로써 연구대상 국가들이 체결하는 국제공동연구 계약서의 일반적인 양식과 필수 삽입조항 항목 및 내용 경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4) 본 연구에서 조사·분석한 표준 계약서(모델)은 모든 국제공동연구에 적용되는 표준 계약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닌, 특정 기관들이 국제공동연구 계약 또는 협약 체결 시 활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 및 활용하는 표준 계약서(모델)을 말함

나.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률 분석

1) 국가별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률 현황 파악

국제공동연구 계약 체결, 연구 수행 및 결과물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 미국, 중국 국가별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제도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1차적으로 각 국가별로 국제공동연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모두 수집하였으며, 그 중 국제공동연구 관련 사항을 발췌 및 정리하여 각 국가별 관련 규정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2) 국가 간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률 비교 분석

구 분	특허 공유관계에 대한 규정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권을 공동 소유한 경우, 특허법(제99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실시는 가능하나 제3자 라이선스를 위해서는 공동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함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공유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제조, 사용 등의 실시 가능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양도할 수 있음 각 공유자는 자유롭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으며, 통상실시권 허락에 따른 수익을 배분할 필요 없음 공유 특허권 전체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의 경우 공유자 전원 동의 필요 위 원칙들은 모든 공유자간의 계약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음
중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고, 약정이 없는 경우 각 공유자 단독으로 실시가능하며, 실시에 따른 수입은 실시자 자신이 처분 가능 약정이 없는 경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으나 실시료는 배분 원칙적으로 공유하는 특허권의 이전에 대한 명문 규정 없음 지분의 양도, 포기, 독점적 실시권의 허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필요

출처: 코레일 연구원, 국제 공동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12

수집 및 1차 정리된 자료를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인 연구비용, 연구 성과물의 소유·활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 비교 분석하였다.

다.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개발(한-미, 한-중)

본 가이드라인은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계약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 조항과 함께 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 국제공동연구의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제공동연구 관련 지침서가 전무한 실정으로, 계약 조항 이해에 앞서 중국 특유의 제도와 법률 및 문화적 차이를 인지한 뒤 국제공동연구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국제공동연구 계약서(협약서) 외에 본 계약 체결에 앞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연구 결과물 관련 비밀유지 요청을 요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MOU) 샘플과 비밀보호협약서(NDA) 샘플을 함께 제시하였다. 한편,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및 법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미, 한-중간에 국제공동연구 계약 체결시 주의 또는 점검해야 할 사항(체크리스트)을 삽입하였으며, 국가별 용어 표현 차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용어를 설명한 용어해설서를 포함하였다.

3. 연구의 방법

가. 선행자료 조사·분석

연구에 대한 선행 작업으로, 관련 문헌 및 과거 유사한 주제로 작성된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여 연구의 기초로 활용하였다. 대표적인 조사 문헌 및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조사 문헌 및 자료 목록

자료명	출처(발행기관)	발행년도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발전방안(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4
국제공동 R&D 국제계약 가이드라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충북대학교	201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산학공동연구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비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국제공동연구 특허성과 실태조사 및 성과향상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0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분석과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9
국제공동연구 성과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기술혁신학회지	2009
해외 현지 맞춤형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위한 현지화 사업지원 전략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09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법제 정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국제공동연구성과 귀속·활용 관련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교육부(舊 교육과학기술부)	200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글로벌 공동연구개발의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국제공동연구 성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8
산학협력 표준모델 공동연구계약 가이드라인	특허청	2007
공동연구계약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06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주요 쟁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5

나. 국제공동연구 사례(계약서 및 표준계약서) 수집 및 분석

국제공동연구 계약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검색 사이트에서 공개되어 있는 계약서를 수집하였으며, 표준계약서(모델)의 경우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기관 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본 연구 수행기관 내부적으로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한 변호사들이 선행 경험과 선행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로 수집된 사례(계약서 및 표준계약서)를 분석하였다. 특히, 국제공동연구 관련 주요 쟁점대상인 연구비용, 연구 성과물의 소유·활용을 중심으로 계약 사항을 분석하였다.

표. 국제공동연구 표준계약서(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석 예시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 (원문)	ARTICLE 4 PATENTS 4.1 _____. In the event that patents or patent applications are solely developed or invented by a Party, those shall be solely owned by the developing or inventing Party. In the event that patents or patent applications are jointly developed or invented by a Party, those shall be jointly owned by both Parties. _____.
해석	•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개발된 사항에 관한 특허 또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개발 당사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며, 공동으로 개발된 사항에 관한 특허 또는 특허출원은 양 당사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됨
분석	• 국제공동연구의 성과에 대하여 특허 또는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귀속되도록 일반적인 형태로 규정함

다.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률 수집 및 분석

국내 법률 수집의 경우, 법령 검색 사이트를 통해 ‘공동연구’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공동연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수집하였다.

미국 및 중국의 경우, 웹 사이트 검색을 통한 자료 수집과 함께 관련 문헌자료들에서 기재되어 있는 법률 내용을 수집하여 국제공동연구 관련 사항 유무를 재확인하였다.

국가별로 수집된 법률 자료를 국제공동연구 사례 분석과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주요 쟁점 대상인 연구비용, 연구 성과물의 소유·활용을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국가별 규정 경향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후속 작업으로 재분류 검토 결과와 함께 문헌 자료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국가간의 법률·제도적 차이를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II. 국제공동연구의 개요

1. 국제공동연구 정의

국제공동연구의 일반적인 정의는 ‘상이한 국가에 소속된 복수의 연구개발주체가 동일한 연구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 자금·인력·시설·기자재·정보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 방식’을 의미하며, 법령에 의한 국제공동연구 정의는 다음과 같다.⁵⁾

구 분	정 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제공동연구에 대해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	협동연구개발에 대해 “대학·기업 또는 연구소가 다른 대학·기업·연구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요원, 연구개발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을 공동으로 제공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후, 동법 제11조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대학·기업 또는 연구소가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동연구개발과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⁶⁾ 에 해당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국내의 대학·기업 또는 연구소 사이의 협동연구개발과제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국제공동연구에 대해 간접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 제2호	국제공동연구사업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5) 윤종민, “국제공동연구 성과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기술혁신학회지 제12권 3호, 2009.9. 502면

6)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제10조

1. 국내의 대학·기업 또는 연구소가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연구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것.
2. 국내의 연구개발요원과 외국의 연구개발요원이 동일한 장소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

2. 국제공동연구 유형

국제공동연구는 해당참여국가의 수에 따른 분류 외에도 연구사업의 수행 형태, 목적,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분류 목적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수행방식에 따른 분류

유형	내용
국제하청형	상대국가의 연구자가 지시하는 내용대로 실험 또는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 유형
외주형	연구의 내용을 정의하고, 수행은 상대국의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결과물을 습득하는 연구 유형
학습형	연구목적이 처음부터 상대국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하는 연구 유형
자율/동격형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상대국 연구 파트너를 찾아 동등한 자격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유형
참여형	외국정부 혹은 연구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유형
기관목적형	국내 연구소가 기관의 목적으로 공동연구프로젝트를 발의하고 외국 파트너의 참여를 요청하는 유형
국가주도형	우리나라 정부가 대단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발의하고 외국 과학자의 참여를 유도 및 관리하고 주관하는 유형

출처: 충북대학교,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마련을위한 연구, 2013

나. 추진목적 및 내용에 따른 분류

국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를 비롯한 국제과학 기술협력 프로그램은 추진목적 및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유형	내용
기술외교형	협력 협정의 체결, 정상 및 각료급 회의, 실무회담, 국제기구·지역기구 등 다자간 협력체 참여, 국제회의 주관 및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유형
자원교류형	인력의 교류, 해외연수·파견, 정보교류, 해외연구소의 유치, 국제세미나 개최, 단기 기술자문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유형
거점확보형	해외공동연구센터의 설립, 해외사무소 설립, 대형 국제프로젝트 또는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유형
공동연구형	국제공동연구, 해외위탁연구, 단기 실용화 사업, 전략적 제휴 형태
기반조사형	기술조사단, 인프라 조사 사업, 해외전시회 참관 형태

출처: 충북대학교,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마련을위한 연구, 2013

다. 다자간 협력사업 내 분류

다자간 협력체를 활용한 국제공동연구는 다수의 국가들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거나 특정 국제기구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를 말하며, 추진 주체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 1 주요국가주도의 다자간 국제공동연구 협력사업
- 2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다자간 국제공동연구 협력사업
- 3 대규모 연구장비의 공동건설 활용을 위한 협력사업

출처: 충북대학교,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마련을위한 연구, 2013

라. 국제공동연구 추진방법에 의한 분류

유 형	내 용
국제협약	과제에 의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외국 연구기관과의 체결된 협약
기술연수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연구기관 등에 15일 이상 국내 연구자를 파견하는 유형
연구자해외파견	해당 과제의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국내연구자를 외국 연구기관에 3개월 이상 파견하는 유형
외국연구자 유치	외국 연구자가 해당 과제의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유형
위탁연구	연구내용 일부를 외국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위탁하는 유형
정보교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연구과제에 대해 외국 연구기관과 정보교환 또는 자문의뢰하는 유형

출처: 충북대학교,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마련을위한 연구, 2013

3. 국제공동연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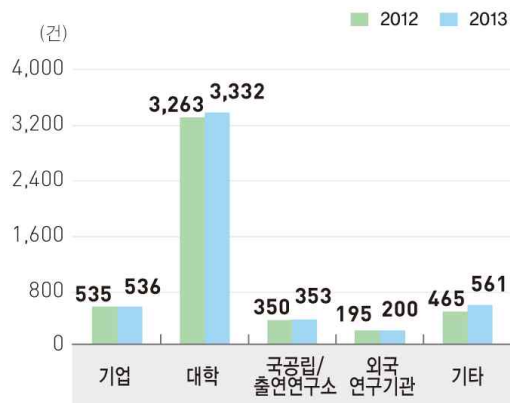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국제공동연구 분야는 아직 실적 및 투자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으나 국제공동연구의 실시 및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 공동·위탁연구 현황

그림. 공동연구 참여기관 추이



그림. 위탁연구 참여기관 추이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2013

2013년 참여기관별 연구수행 비중을 살펴보면, 공동연구의 경우 외국 연구기관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전년대비 공동연구 참여기관이 증가하였으며, 기업이 7,421건(4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탁연구는 공동연구와는 달리 기업보다는 대학이 3,332건(66.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체 위탁연구에서 대학에 대한 위탁연구 집중도가 높다.

그림. 부처별 공동연구 수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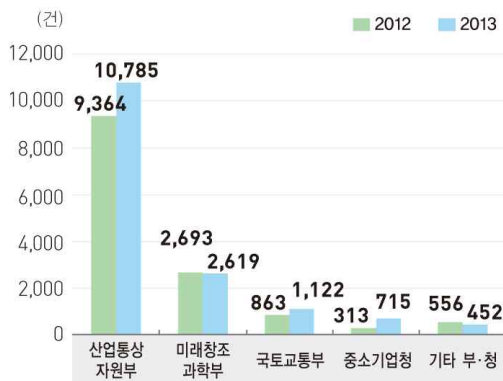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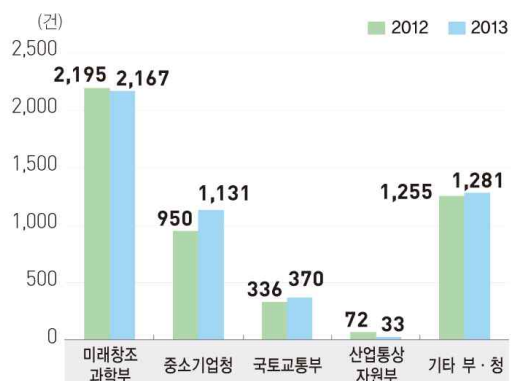


그림. 부처별 위탁연구 수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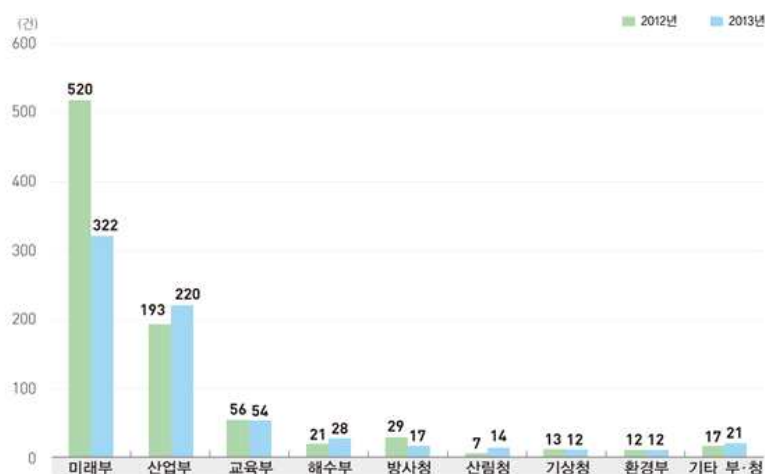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2013

2013년 공동연구의 부처별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68.7%, 미래창조과학부가 16.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위탁연구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43.5%, 중기청 22.7%, 국토부 7.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산업자원통상부가 다수임을 보일 때,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당 투자규모는 산업자원통상부의 연구당 투자 규모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나. 국제공동·위탁연구 현황

그림. 부처별 국제공동·위탁연구 추이(2012-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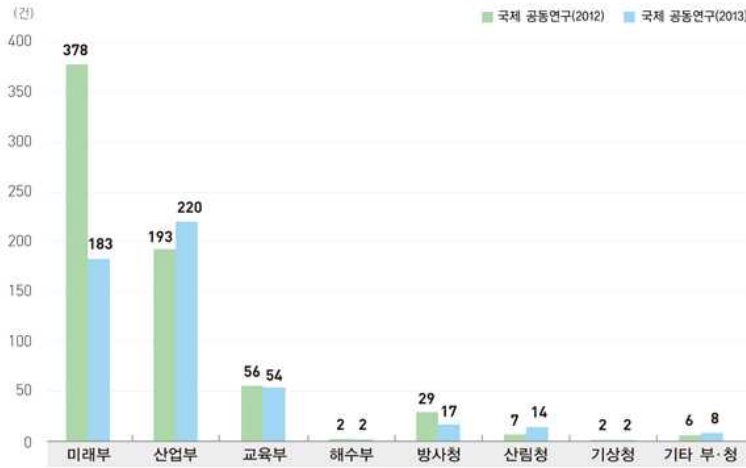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2013

부처별 국제공동·위탁연구 추이를 살펴보면, 미래창조과학부(322건, 46.0%)와 산업통상자원부(220건, 31.4%)에서 대부분의 국제공동·위탁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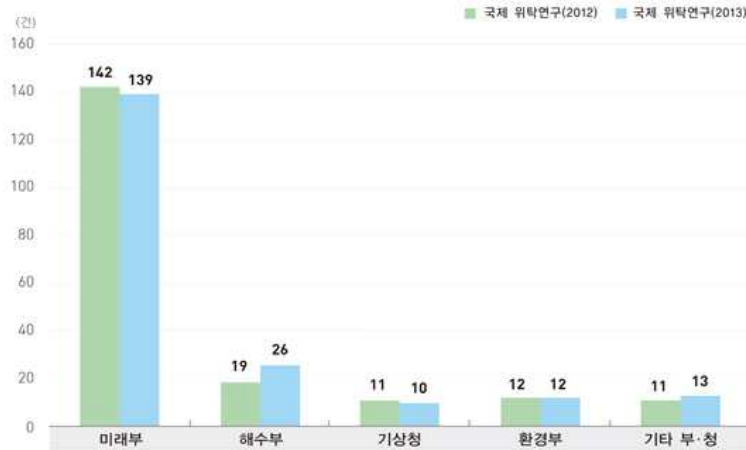
2013년 국제공동연구의 미래부, 방사청를 제외하고는 국제공동·위탁연구는 부·청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위탁연구는 해수부를 제외한 타 부·청은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부처별 국제공동연구 추이(2012-2013)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2013

그림. 부처별 국제위탁연구 추이(2012-2013)



출처 : 201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다. 국가별 현황

- ① 우리나라와 국제 공동·위탁연구를 수행하는 상대국으로는, 미국이 310건 (44.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일본 49건 (7.0%), 독일 41건(5.9%)의 순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원자력 발전소 관련 정보교환의 증가로 국제 공동·위탁연구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었다.
- ② 유형별로는 정보교환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정보교환 199건(39.8%), 외국연구자유치 194건(38.8%), 국제협약 103건 (2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국가별 국제 공동·위탁연구 상위 10개국 추이(2012-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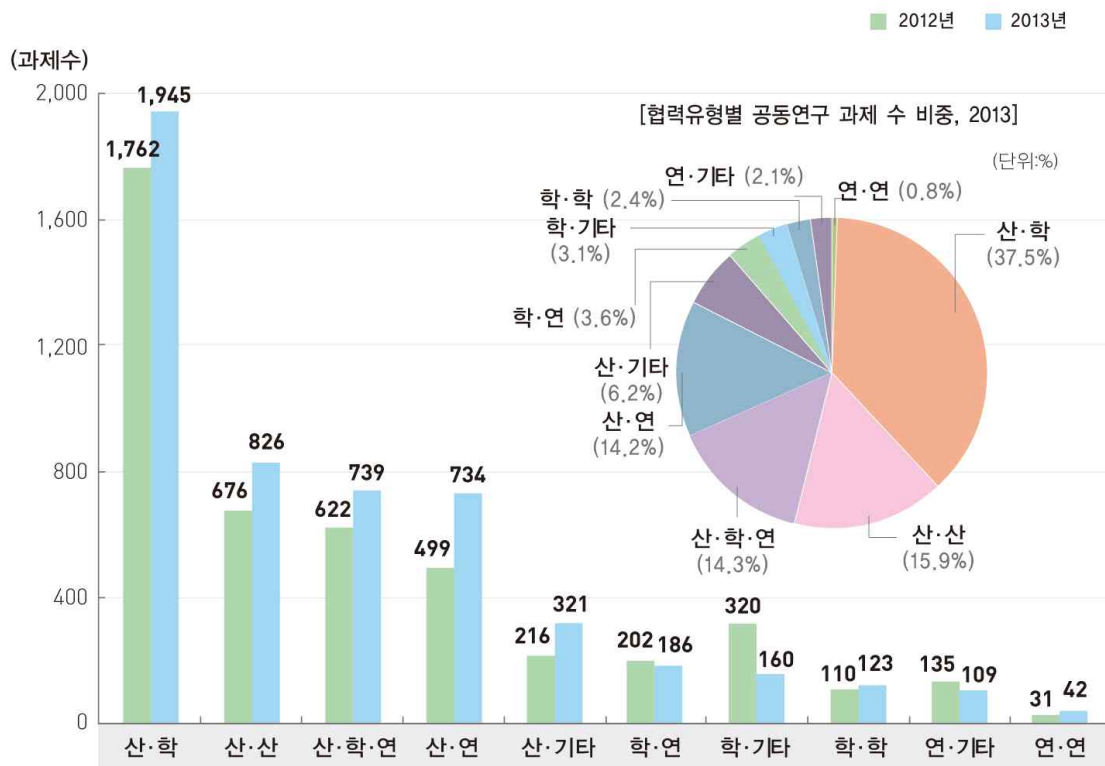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2013

라. 협력유형별 현황

- ① 분석 대상 과제(41,778개) 중 12.4%(5,185개)가 공동연구로 수행되었다.
 - 투자액 규모로는 전체 분석 대상 투자액(14조 2,314억원) 중 24.3%(3조 4,636억원)가 공동연구에 해당하였다.
- ② 공동연구 과제를 협력유형별로 살펴보면, 산·학, 산·연, 산·학·연, 산·산, 산·기타 등 기업과의 협력이 두드러졌다.
- ③ 과제 수 기준으로는 산·학 공동연구가 37.5%(1,945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산·산 15.9%(826개), 산·학·연 14.3%(739개)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 ④ 투자액 규모로는 산·학·연 30.0%(1조 386억원), 산·학 27.8%(9,614억원), 산·연 14.4%(4,979억원)의 순으로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림. 협력 유형별 공동연구 과제 수 추이(2012-2013)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2013

4. 국제공동연구 성과물 관리 현황

가. 연구성과물의 귀속과 활용 등에 관한 주요 이슈

연구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이슈는 크게 연구개발사업에서의 보유기술 활용에 관한 법·제도적 이슈와, 도출된 연구성과물의 활용 과정에서 소유 형태에 따른 법·제도적 이슈가 존재한다.

첫 번째 이슈의 경우,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술협력을 위한 일방의 보유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선행기술로써 협력 대상 기관과 제3자가 공유하고 있는 기술인 경우, 해당 기술의 활용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연구개발성과물인 특허권 등의 성과물을 타 연구기관 등과 공유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등 해당 성과물에 대한 사용 및 처분, 제3자에 대한 실시권 부여 등 연구 결과의 활용에 관한 법률적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⁷⁾

나. 국내 성과물 관리 현황⁸⁾

1) 협약 체결 업무의 담당자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협약 체결은 주로 연구관리부서 또는 연구책임자가 담당하는데,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 활용방법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당사자 간 합의된 협약을 중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연구협약체결 담당자의 성과물에 대한 관리 및 분쟁예방에 대한 주의 뿐만 아니라 기관 자체의 국제공동연구협약 체결에 관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담당자의 협약체결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7) ECO Market, ICT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연구, 2015, 19면

8) 본 현황 보고는 2009년에 발행된 '국제공동연구 성과물 관리제도(윤종민, 기술혁신학회지)'에 의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표. 기관별 국제공동연구 협약체결 주체

협약체결 형태	대학	출연(연)	총계
소속기관 연구관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	34.3%	13.5%	24.8%
연구책임자가 주도적으로 수행	53.3%	24.5%	39.3%
기관지침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수행	3.1%	31.0%	16.3%
연구책임자의 도움을 받아 연구관리 부서가 수행	9.3%	31.0%	19.6%

대학의 경우, 협약체결을 연구책임자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형태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속기관 연구관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그 다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관지침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수행하거나 연구책임자의 도움을 받아 연구관리 부서가 수행하는 비중은 각각 10% 미만을 보여 대부분 연구책임자와 소속 연구관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과는 달리 출연연은 협약체결에 있어 기관지침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수행하거나 연구책임자의 도움을 받아 연구관리 부서가 수행하는 경우가 31%로 가장 많아 주체 간 다른 응답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성과물 관리규정의 제정 및 활용정도

성과물 관리규정은 해당 기관의 성과물 관리활동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제정된 규정으로, 국제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는 담당자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성과물의 관리와 취득, 이용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공동연구성과물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자체규정의 제정정도

자체규정 제정 형태	비율
비교적 상세히 규정	12.1%
가분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 간단히 규정	36.2%
특별한 규정이 없이 연구책임자에게 맡겨짐	29.8%
잘 모르겠음	21.9%

표. 자체규정의 활용정도

자체규정 활용 현황	비율
소속기관 지침 따라 협약체결	30%
상대기관 지침 따라 협약체결	7%
소속기관 지침 근거로 상호 협의하여 체결	40%
상대기관 지침 근거로 상호 협의하여 체결	23%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에서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성과물을 관리하는 경우는 48.3%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규정이 있더라도 소속기관의 지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30%로 나타나 더욱 실효성 있는 규정의 마련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자체규정 미흡으로 인한 어려움 정도

구분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적다	매우 적다
비중(%)	20%	31%	31%	7%	11%

특히 자체 규정이 제정되어 있더라도, 미흡한 규정 내용으로 인한 어려움 정도에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51%가 어려움이 크다고 답변하는 등, 규정의 미비와 더불어 규정 자체의 미흡함이 성과물 관리에 관한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성과물 관리규정의 바람직한 정비 방향

협약체결 형태	비중(%)
중요한 사항은 국가법령으로 자세히 규정	30
법령에서는 기본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기관에 위임	61
법령에서는 규정하지 말고, 모든 사항을 기관에 위임	8
기 타	1

이러한 성과물 관리규정의 바람직한 정비 방향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세부 사항을 기관에 위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61%로 다수를 보여 지켜야할 기본 원칙과 기관의 특성에 따른 유연함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체 규정의 미제정·미활용 정도가 높고 성과물 관리규정이 낮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성과물 관리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과 단위기관 차원의 대응이 동시에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 성과물의 소유 및 활용방법

표. 자체규정의 제정정도

성과물 소유방식	비율
투자지분에 따른 공동소유	20%
각자발명 각자소유, 공동발명 공동소유	66%
발명형태 관계없이 모두 자금제공자 소유	7%
자금제공 관계없이 모두 발명자 소유	7%

표. 자체규정의 활용정도

성과물 소유방식	비율
단독소유 자유실시, 공동소유 상대방 동의필요	67%
단독소유, 공동소유 모두 동의필요	26%
단독소유, 공동소유 모두 동의 불요	7%

국제공동연구협약과 관련된 성과물의 소유에 관한 자체규정은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관리 원칙과 같이 ‘공헌도 주의’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 성과물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단독소유, 공동소유를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33%에 달해 성과물 활용에 있어서의 분쟁이나 관리상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4) 지식재산권 취득 및 활용실적

표. 국제공동연구 특허 취득실적

있다	없다
25%	75%
□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평균 · 출원 0.54건, 등록 0.25건	

표. 국제공동연구 특허 활용실적

특허현황		활용실적		
특허출원	특허등록	시제품	기술료수입	후속연구개발
32건	15건	11건	1건	4건

국제공동연구 특허 취득실적을 조사한 결과 취득 실적이 없다는 응답이 7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활용 실적은 국제공동연구에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2007년 기준 7,621억 원)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관리화의 미흡은 연구 결과를 사용·수익·처분에 있어 제약을 가져오거나 법적인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공동연구의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인적·물적 투입 증가 대비 산출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5. 미국의 국제공동연구 관리현황⁹⁾

미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는 연방정부차원의 독립적 과학기술 전담부처 없이 독자적 임무와 역할을 담당하는 연방부처들에 의해 과학기술정책이 수립·집행되는 다원화된 분산형 연구개발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기술 관련 정책은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책정하는 전략 계획에 따라 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각의 전담부처는 연구개발비 산정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표. 한국과 미국의 기관별 연구개발비 정산 및 실적보고 비교

국가	연구비 지급방식	정산실시 시기	사용실적 보고	비목별 정산기준 (인건비)	비목별 정산기준 (직접비)
한국 (KISTEP)	선금급 지급	연구종료 후 정산	종료 후 3개월 이내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등
미국 (NSF)	선금급& 상환금	분기별 정산	분기말 12일 내	-	인건비, 기자재비 등

출처 : ECO Market, ICT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연구(18면), 2015

이러한 연구개발체제는 미국의 과학자와 연구기관들이 높은 자율성과 우수한 연구체제를 가능케 하였으나, 분산된 연구체제 및 복잡한 의사결정구조로 인해 국제연구자금 및 연구활동의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을 동시에 가진다.¹⁰⁾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은 1950년 국립과학재단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과학 진보, 국민 건강, 번영, 복지 향상, 국방 수호 및 기타 과학에 관한 사항을 연구 및 지원하는 기구로서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 공동연구 수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라 할 수 있다.¹¹⁾ NSF의 주요 사업은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육성을 위하여 대학교, 기업체,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협력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9) 중국의 경우 단기간의 연구기간 및 조사로 인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거나 규율하는 기구나 제도를 정하거나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번 보고서에서 제외하였다.

1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한미 과학기술협력관계 발전방향 연구, 5면

11) NSF ACT, PUBLIC LAW 507-81ST CONGRESS, CHAPTER 171-2D SESSION, S.247

표. NSF의 국제공동연구 활동 정책

활동영역	권고안
미국 국제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활동 조정·관리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연방연구기관 및 비영리 과학단체와 함께 국제 과학기술협력 및 과학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메커니즘 확립과 행정적 요구사항 및 절차를 간소화 2. 미국의 국제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국제 공동연구 촉진(특히 개발도상국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신진연구자 및 공학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NSF 주도(나노기술 등) 분야에서 과학·공학 연구 및 과학교육 부문의 국제협력활동 확대전략 수립 4. 신진연구자 및 공학자의 국제공동연구 참여 확대 5. 개발도상국과 과학기술 및 교육 분야 국제공동연구 확대, 개발도상국에서의 과학기술능력배양을 위한 협력프로젝트개발과 파트너십 구축 6. 국제공동연구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연구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가상기관 설립
외교정책 및 글로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보의 활용 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사회학, 행동과학 및 경제학 분야의 연구·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공동연구개발과 파트너십 확대 기회 모색 8. 양자간, 다자간, 지역간 과학기술·교육협력 활동지원 확대를 위한 OSTP, 국무부, 기타 연방기관 및 국제기구와 밀접하게 협력 9. 국무부와 지식공유 및 인력교류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출처 : National Science Board, <http://www.nsf.gov/nsb/documents/2000/nsb00217/nsb00217.pdf>

NSF는 의학을 제외한 모든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는 유일한 연방기관으로서 미국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NSF는 연구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소프트웨어, 발명품을 개발한 경우는 결과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확보된 이후에 공유할 수 있으며, NSF 지원 하에 개발된 지적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수혜자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NSF 후원으로 개발된 결과물은 후원 사실에 대한 인정 문구를 표기해야 하며, 대중매체와 언론기관 인터뷰 시에도 표명되어야 한다.¹²⁾

NSF의 국제공동연구 및 교육활동을 하는 미국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지원은 국제협력실(Office of Inter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OISE)에서 담당하며 국제공동연구 지원은 일반연구과제 지원과 마찬가지로 ‘과제신청 및 선정절차지침(The Proposal & Award Policies & Procedures Guide, PAPPG)’의 적용을 받는다.¹³⁾

12)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2013, 60면

13)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2013, 35면

Ⅲ. 국제공동연구 계약 사례 분석

1. 국제공동연구 계약 사례 분석의 필요성

국가를 불문하고, 국제공동연구 협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공동연구주체, 연구과제, 연구목적, 연구내용, 참여연구원, 비용분담, 특허출원 및 재산권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된다.

그들 중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조정이 필요하며, 분쟁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사항으로는 ‘연구비 및 특허비 등의 부담에 있어서 부담주체와 부담비율’, ‘연구결과물의 소유 및 실시’가 있다. ‘비용 부담’은 연구에 대한 참여비율과 함께 종국적으로 연구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 가능하다. 이에 국제공동연구계약 사례를 통하여 비용부담 주체 및 비율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소유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 연구수행의 목적이자 성과의 척도가 되는 ‘연구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이라 할 수 있겠다. 국가별로 해당 부분에 대한 정책 또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공동연구 계약 체결 시는 물론 수행 전 과정에 있어 분쟁발생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부분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제공동연구계약의 실제 사례 중에 연구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특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자체 개발한 공동계약 표준모델을 함께 수집 및 분석하였다. 각 기관별 공동계약 표준모델은 국제공동계약에 필요한 기본사항과 함께 기관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추가되어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실 계약서 분석과 더불어 기관별 공동계약 표준모델 분석을 통하여, 보다 광범위한 국제공동계약 체결 유형 및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국제공동연구 계약 사례 분석 내용

사례 1.	Cooperation Agreement A기업, B연구소 - C기업, D연구소
-------	---

가. 계약서 일반사항

계약서명		Cooperation Agreement
계약 주체	주체 유형	복수의 기업과 복수의 연구소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업, B연구소 • C기업, D연구소
계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공동 • 비용부담: - • 소유: - • 활용: 양 당사자 간에 비독점적, 비양도성의 재 실시 권한 없는 무상의 사용권 부여

나. 계약서 분석(비용·소유·활용)

1) 비 용 (내용 없음)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
분석	공동연구 비용은 각 당사자가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합의가 없음

2) 소 유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서 조항(원문)</p>	<p>3.3 (a) The Partners shall agree for each individual case on the treat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ecision of filing, responsibility in registration process, share of ownership and registration cost) of joint inventions (i.e. inventions in which employees of several Partners participate whose contributions to the invention cannot be registered separately by each Partner as industrial property rights).</p> <p>(b) During their respective terms, the involved Partners are entitled to use and license such inventions and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s granted to them without any financial compensation and any prior consent of other involved Partners.</p> <p>(c) The rights of the non-involved Partners to such joint inventions and joint authorship shall be governed by Section 3.2.</p> <p>(d) In the case of copyright protected works jointly created during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 (joint authorship), Section 3.3 (b) and (c) shall apply correspondingly.</p>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연구로 개발된 발명의 취급(지분비율, 비용 부담 등)을 각 건 별로 별도 합의하기로 하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함 • 공동연구에 참여한 당사자는 다른 공유자 사전 동의 없이 자유롭게 실시 가능하고 별도의 비용 지급 의무가 없음 • 공동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의 권리는 별도로 정함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결과물에 관해서도 별도로 정함

다) 활용

가) 프로젝트 결과물 및 실시

구분	내용
<p>계약서 조항(원문)</p>	<p>3 Project Results / Rights of Use</p> <p>3.1 The Partners shall inform each other about the attained research results or work progress, and shall exchange interim and final reports as given in their respective funding notifications. The Partners shall draw up common final reports for the funding authorities.</p> <p>3.2 (a) For the du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only, the Partners shall grant each other a non-exclusive, non-transferable, non-sublicensable, royalty-free right of use to any inventions generated by them during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 as well as to industrial property rights (patents, trademarks, service marks, designs, and other protective measures of intellectual property to be registered) filed by and granted to the respective Partner at its own expense for these inventions.</p> <p>(b) Upon request, for further purposes each Partner shall be granted a non-exclusive, non-transferable, non-sublicensable license on fair market conditions which shall be mutually agreed upon prior to the intended use. When assessing the fair market conditions, the necessary contribution of such a Partner to the invention made in the framework of the cooperation can be taken into consideration.</p> <p>(c) In the case of know-how and copyright protected works, including software, created during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 Section 3.2 (a) and (b) shall apply correspondingly.</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약에 따라 생성된 연구결과물을 본 계약의 이행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이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는 공정한 시장 조건에 따라 실시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본 계약에서는 금전적 보상이나 사전 동의 없이 각 당사자가 공동 연구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음 •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시간 및 거리의 제약상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 허락을 일일이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미국 등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 본 계약에서는 관련 지식재산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	--

나) 사업화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4 Commercialization</p> <p>A intends to open business market on OOO system for OOO and OOO products.</p> <p>C intends to open business market on multi beam scanner module for OOO system</p> <p>Because of its status as a non-profit organization B and D will participate in the above mentioned commercialization of A and C with licensing agreements according to Section 3.</p> <p>Sale pricings of A and C will include a license fee on fair market conditions for D and B. This shall require a separate agreement between the Partners concerned in each individual case.</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약의 당사자들 중에서 영리기업은 공동연구개발결과물을 사업화하여 시장에 판매하고 비영리연구소는 기술이전계약을 통한 기술료를 받는 방식으로 합의 • 사업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연구계약에 모두 포함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별도의 계약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비밀유지

구 분	내 용
<p>계약서 조항(원문)</p>	<p>5 Confidentiality</p> <p>The Partners shall keep in confidence for the duration and for five (5) years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Project any other Partner's technical or business information which was declared as confidential, and shall not disclose such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respective Partner. This obligation shall not apply to any information which i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ven to have been known to the receiving party prior to the time of its receipt pursuant to this Agreement; or - in the public domain at the time of disclosure to the receiving party or thereafter enters the public domain without breach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or - lawfully acquired by the receiving party from an independent source having a bona fide right to disclose the same; or - independently developed by an employee of the receiving party who has not had access to any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유효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본 계약의 경우도 종료 이후 5년간 상대방의 기술상, 경영상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약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존속시키는 기간은 해당 비밀정보가 속한 기술분야의 특성, 거래실정, 당사자간의 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라) 출판

구 분	내 용
<p>계약서 조항(원문)</p>	<p>8 Publication</p> <p>8.1 Publication activities shall be compatible with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fidentiality obligations and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owner(s) of the Project results.</p> <p>8.2 At least four (4) weeks prior written notice of any publication activity shall be given to the other Partners concerned, including sufficient information concerning the planned dissemination activity and the data envisaged to be disseminated.</p> <p>Following notification, any of those Partners may object within three (3) weeks after receipt of the notification to the envisaged publication activity if it considers that its legitimate interests in relation to its Project results or already existing inventions or industrial property rights could suffer from the publication activity. In such cases, the publication activity may not take place unless appropriate steps are taken to safeguard these legitimate interests. If neither Partner objects to the envisaged publication within the foresaid period of three (3) weeks, the publication is deemed to be approved by all other Partners.</p> <p>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all Partners reserve the right to publish and disseminate its own Project results, which do not damage or make a negative effect on legitimate interests of other Partners, under non-discriminatory conditions.</p> <p>8.5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s conferring rights to use in advertising, publicity or otherwise the name of the Partners or any of their logos or trademarks without their prior written approval.</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약에 따른 연구결과물을 논문 등으로 출판하는 것을 허용하 되, 사전에 4주 이상의 시간을 두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상 대방이 연구결과물의 법적 보호를 이유로 출판을 반대하는 경우에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는 출판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연구결과물의 공표/출판은 특허 출원의 신규성 상실과 직결되는 문제 로서, 연구개발 당사자간에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

가. 계약서 일반사항

계약서명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계약 주체	주체 유형	연구기관과 대학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관 • B대학
계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공동 • 비용부담: C의 승인을 받은 Sponsor(A기관)가 부담 /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비용은 공동부담 • 소유: 단독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는 단독 소유, 공유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는 공동 소유 • 활용: 각 당사자는 공동지식재산을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를 가짐

나. 계약서 분석(비용·소유·활용)

1) 비 용

가) 비용 일반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4. Payment.</p> <p>a. B acknowledges that prior to the completion of each year of the Project, Sponsor must gain approval from C to fund the next year of the Project. If Sponsor fails to get approval from C for the next year, this Agreement shall automatically terminate or expire at the end of the current year.</p>

	<p>b. Sponsor agrees to pay B the amount listed in the Budget (attached as Appendix B) in accordance with the Payment Schedule (attached as Appendix C). The total cost charged to Sponsor for the Project work under this Agreement will not be more than \$273,600 USD under this fixed price Agreement without Sponsor's consent. This Agreement is incrementally funded, and payment to B under this Agreement is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funding received by Sponsor from C. B acknowledges and understands that yearly funding received by Sponsor from C may vary depending on government's funding adjustment or yearly evaluation on the Project and that payment should be made in KRW because Sponsor cannot tolerate flexibility of exchange rate of fixed funding from C given in KRW. The initial funding for year 1 is estimated to be \$91,200.00 USD subject to the exchange rate of KRW 100,000,000 at the time of payment.</p>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를 B에게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C로부터 연구비를 매년 지급받아 B에게 지급되는 점, 정부 예산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급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점, 원화로 연구비를 정액 지급받기 때문에 미화로 환전하면서 발생하는 환율 변동 위험이 있는 점, C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는 일정에 따라 B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일정도 지연될 수 있는 점 등이 계약서에 모두 반영되었으므로, 연구비 지급과 관련되어 예상되는 문제들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음

나) 공동지식재산 보호 및 유지에 대한 비용공동부담

구 분	내 용
<p>계약서 조항(원문)</p>	<p>9. Use and Protection of Joint Intellectual Property.</p> <p>a. Rights to Joint Intellectual Property; Sharing of Expenses. <u>Joint Intellectual Property shall be owned equally by the parties.</u> Except as provided below, the parties agree: (i) to share equally all expenses incurred in obtaining and maintainin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on Joint Intellectual Property, and ~</p> <p>b. Exceptions to Expense Sharing.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a party may decide that it does not want to financially suppor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for certain Joint Intellectual Property (a “Non-Supporting Party”). In that case, the other party is free to seek and obtain such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at its own expense (a “Supporting Party”), provided that <u>title</u> to any such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shall still be held jointly by the parties. However, if the Non-Supporting Party then subsequently licenses and/or otherwise uses the Joint Intellectual Property for economic gain in a particular country that is covered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obtained by the Supporting Party, then Non-Supporting Party agrees to pay: (a) fifty percent (50%) of the fees and expenses incurred by the Supporting Party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plus (b) interest accruing from the date upon which such costs were incurred at the rate per annum announced from time to time by the Wall Street Journal as the prime rate.</p>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으로 개발한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비용은 양자가 분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특정 공동지식재산권 취득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미리 규정함으로써 문제 발생의 소지를 방지하고 있음

2) 소 유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서 조항(원문)</p>	<p>6. Ownership of Project Work Product.</p> <p>a. Intellectual Property Definition. As used in this Agreement, “Intellectual Property” means any and all art, method, process, procedure, invention, idea, design, concept, technique, discovery, improvement or moral right, regardless of patentability, as well as any patents, patent applications, copyrights, trademarks, service marks, trade names, trade secrets, know-how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cognized in any country or jurisdiction in the world.</p> <p>b. B Developments. B will own any and all work product and/or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ed solely by it under this Agreement (“B Intellectual Property”).</p> <p>c. Sponsor Developments. Sponsor will own any and all work product and/or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ed solely by it under this Agreement (“Sponsor Intellectual Property”). Any work performed by Sponsor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performed at a location provided by Sponsor. Sponsor agrees that it must obtain prior written permission from B’s Office of Sponsored Programs if it would like to perform work under this Agreement on B’s premises.</p> <p>d. Joint Developments. B and Sponsor will jointly own any and all work product and/or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ed jointly (e.g., to the extent the parties would be considered joint inventors and/or joint copyright holders, as applicable, under relevant U.S. intellectual property laws) under this Agreement (“Joint Intellectual Property”).</p> <p>e. Prior/Outside Developments. Each party will retain its rights in any work product and/or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ed prior to and/or outside the scope of this Agreement.</p>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 개발한 결과물은 각자 소유하되, 공동으로 개발한 결과물은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연구개발성과물 소유 원칙에 부합 • 단, 연구계획서상 각자의 역할 부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연구 노트 등의 작성을 통해 누가 실질적으로 발명에 기여하였는지를 구체화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3) 활 용

가) 공동지식재산권 사용 및 보호

구 분	내 용
<p>계약서 조항(원문)</p>	<p>9. Use and Protection of Joint Intellectual Property.</p> <p>a. Rights to Joint Intellectual Property; ~ and (ii) that each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license such Joint Intellectual Property to third parties (with the right to sublicense) without accounting to the other and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In the event that consent by each joint owner is necessary for either joint owner to license the Joint Intellectual Property, the parties hereby consent to the other party's grant of one or more licenses under the Joint Intellectual Property to third parties and shall execute any document or do any other act reasonably requested to evidence such consent.</p>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허락의 경우에, 한국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미국법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음 • 본 계약에서는 B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국법에 따라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동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의

나) 상업적 실시권 우선협상권(Commercial Licensing Opportunities)

구 분	내 용
<p>계약서 조항(원문)</p>	<p>12. Commercial Licensing Opportunities Available to Sponsor. Sponsor will have one hundred eighty (180) days <u>after receiving a Disclosure Notice to let B know</u> if Sponsor is interested in negotiating a non-exclusive or exclusive commercial license to the B Intellectual Property and/or Joint Intellectual Property that is referenced in the Disclosure Notice (the "Negotiation Period"). B agrees that during the Negotiation Period it will not conduct license negotiations with any other party for the same B Intellectual Property and/or Joint Intellectual Property,</p>

unless Sponsor indicates during the Negotiation Period that it is interested in negotiating only a non-exclusive license. Sponsor understands and agrees that if it is in breach of this Agreement at the time it receives the Disclosure Notice (for example, if Sponsor is delinquent in making payments as required under this Agreement), it is not entitled to request any exclusive negotiations during the Negotiation Period and B is free to pursue licenses with other third parties during such time. If Sponsor would like to negotiate such a commercial license after the Negotiation Period ends and/or a license to Intellectual Property that was not created on the Project, Sponsor is always free to contact B at any time and request to do so (however, B cannot guarantee that the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will be available for the desired license at that time).

The granting of any license is subject to the negotiation and execution of a mutually-agreeable, separate written license agreement. However, B's expectations are that any license will, at a minimum: (a) have a limited term and cover a defined field of use; (b) require mutually-agreeable licensing fees and/or royalties; (c) require Sponsor to pay fifty percent (50%) of all costs and expenses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on the nonexclusively-licensed Intellectual Property, provided that in the event that B subsequently enters into additional commercial license agreement(s) with respect to the same B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d non-exclusively to Sponsor, the propor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costs that are to be paid by Sponsor will be adjusted on a pro rata basis to reflect the new number of licensees on and after entering into the second such additional license agreement (or, with respect to any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costs to be paid pursuant to Section 12(b), after the entering into the first additional license). As an example, if two such additional non-exclusive license agreements are obtained, the half shar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costs otherwise required to be paid by Sponsor will be adjusted to one-third. Any overpayments that have been made will be credited toward Sponsor's payments owed

	to B under the terms of such license; (d) require B's prior written consent to sublicense, except to Sponsor's direct customers; and (e) include disclaimers and <u>indemnification for the benefit of B.</u>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에게 공동 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허락하고자 할 때, 사전 통보하게 함으로써 우선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국내 연구기관(A)이 상업적 실시권을 취득하는 경우 미국 대학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국내 연구기관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미국의 경우 이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특별히 불합리한 조항은 아니라 할 수 있음

다) 출 판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14. Publications. a. Right to Publish. Subject to any applicable confidentiality obligations, Sponsor understands that B is free to publish its Project work (including reports and papers of research and other activities conducted under the Project) in accordance with academic standards. Any such reports or papers may refer to the fact that the Project was conducted pursuant to a grant from Sponsor.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 당사자가 대학이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출판이나 논문 발표를 허용하되, 계약 기간 및 계약 만료 후 2년 동안 사전에 국내 연구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특히 출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판이나 논문 발표를 미룰 수 있게 함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

가. 계약서 일반사항

계약서명		Collaboration Agreement
계약 주체	주체 유형	기업 vs. 기업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기업 • B 기업
계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대학(추정) • 비용부담: 각 참여자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보임 • 소유: 공동성과물의 소유에 대한 조항은 없음(각 당사자는 의연금이나 여타의 외부 자금을 이용하여 장비를 구매하거나 만드는 경우 각자 그를 소유함) • 활용: 연구과정에서 상대방 정보의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부여 규정은 존재하지만, 공동연구 성과에 대한 라이선스는 해당 없음

나. 계약서 분석(비용·소유·활용·분배)

1) 비 용

가) 비용 일반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4. FINANCIAL CONTRIBUTION AND PAYMENT PLAN</p> <p>4.1 Each Party will bear its costs of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and will be responsible for reporting to the Funding Body which is funding that Party exclusively.</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참여자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자금 조달 기관에 보고하는 책임을 부담 • 당사자들이 각국의 담당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형태이므로 각 당사자가 각자의 자금을 관리하고 사용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서 조항(원문)</p>	<p>4.2 Any product or services by a Party outside of the Project may be provided for the other Party with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Where any payment is being claimed by a Party for the provision of any product or services by the other Party outside of the Project, each invoice must be accompanied by a statement certified by an authorised officer of the claiming Party.</p>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에 대하여 어떠한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담당기관의 확인을 동반 • 외부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제공과 그에 따른 부담한 대가 지급 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서 조항(원문)</p>	<p>4.5 Each of the Party will indemnify the other Party and keep it indemnified against all and any refund, repayment or payment that the Party is required to make under the Funding Conditions to the Funding Body on behalf of that other Party.</p>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자금조달 조건하에서 자금조달 기관에 어떠한 환불, 상환 또는 지불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는 보증을 부담 • 각 당사자들은 각국의 담당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형태이므로 상대방의 비용 상환 등에 대한 각국의 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상대방에 대한 보증을 통하여 비용관리의 공백을 최소화 함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4.6 The Lead Exploitation Party will pay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ayment Plan. Any Party to which the Lead Exploitation Party is obliged to make payments under the Payment Plan may appoint an independent chartered accountant, at that Party's expense, to examine the accounts and records of the Lead Exploitation Party relating to its exploitation of the Results provided: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이용권자가 되는 참여자는 지출계획 하에서 독립된 회계사를 임명하여 지출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비용을 지불할 의무 • 지출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지출을 함으로써 지출의 사전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며, 연구성과와 관련한 지출내역을 제 3자를 통하여 감시하여 사후적으로 지출을 관리할 수 있음

나) 비용 공동부담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SCHEDULE 6: Payment Plan</p> <p>Upon availability of the Resul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y calendar year for which the Lead Exploitation Party wants to exploit the Results, it will pay a yearly fee of \$20,000 (twenty thousand US Dollars) for support & maintenance services of the Background software to Mensia in one lump sum payment; • In addition, the Lead Exploitation Party will pay in royalties 20% of all the revenues generated by the sales generated by licensing, sublicensing or commercially exploiting the Results, provided Mensia administers the Servers necessary for the exploitation of the Results;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이용권자가 연구 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에 20,000 달러를 정액으로 지급해야 하고, 주이용권자는 라이선싱, 서브라이선싱이나 상업적 개발의 결과에 대하여 발생한 수익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 •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측에 성과를 활용한 수익의 발생에 대한 위험을 전가시키는 규정으로 보임. 실시 이후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함

2) 소 유

가) 소유 일반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4.4 Each Party will own all equipment purchased or constructed by it using any Financial Contribution or any External Funding. If some equipment is purchased or constructed by a party for the other party, the Party which purchased or constructed it originally owns the equipment until its ownership is transferred to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4.2.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당사자는 의연금이나 여타의 외부 자금을 이용하여 장비를 구매하거나 만드는 경우 이를 소유 • 만약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장비를 구매하거나 만든 경우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규정 4.2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구매자가 소유 • 공동연구 과정에서 구입한 장비에 대한 소유권을 규정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구매를 한 경우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과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기 전의 소유권 귀속을 규정하여 장비소유를 명확히 함 • 다만, 공동연구개발 등 공동의 과업 수행의 결과로 도출된 성과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음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5.3 Each Party will ensure that its own employees involved in the creation of the Results assign to it any Intellectual Property that the employees may have in the Results so that both Parties can file and prosecute patent applications for any Result, and take any action in respect of any alleged or actual infringement of that Intellectual Property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당사자는 직원들에게 귀속되는 성과의 창출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할당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침해를 포함한 보수 유지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연구결과의 성과가 당사자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직원들에게 귀속되고, 그 결과 당사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3) 활 용

가) 라이선스 부여 : 연구과정에서 상대방 정보의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부여 규정은 존재하지만, 공동연구 성과에 대한 라이선스는 해당 없음

나) 스폰서에 대한 라이선스 허가 - 해당 없음

다) 지식재산의 보호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5.4 Any patent filed for the protection of the Results will be co-owned by the Parties in equal shares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의 보호를 위하여 출원된 특허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동일한 비율로 소유 • 공동연구 보호를 위한 동일 비율의 노력이 필요

라) 출 판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7. ACADEMIC PUBLICATION</p> <p>7.2 Each of the Parties will submit to the Lead Exploitation Party and to any Party that has contributed any Background to the Project, in writing, details of, respectively the Result, and of that Background that any employee of that Party intends to Publish, at least sixty (60) days before the date of the proposed submission for Academic Publication. The Lead Exploitation Party or the Party that has contributed the Background (as the case may be) may, by giving written notice to the Party that has submitted those details ("a Confidentiality Notice"): require that Party to delay the proposed Publication for a maximum of twelve (12) months after receipt of the Confidentiality Notice if, in its reasonable opinion, that delay is necessary in order to seek patent or similar protection for any of its Background or any the</p>

	<p>Results that are to be Published; or prevent the Publication of any of its Background that is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Confidentiality Notice must be given within thirty (30) days after receipt of details of the proposed Publication. If a Confidentiality Notice is not received within that period, the proposed Publication may proceed, provided that, whether or not a Confidentiality Notice has been given, any Party's Background that is Confidential Information may not be published.</p>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당사자의 종업원이 학술적 목적으로 출판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지식재산 및 공동연구 프로젝트 결과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두어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통지를 받은 상대 당사자는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출판을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직원들에 의하여 연구의 성과를 활용하여 출판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전통지 및 유예기간을 두어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가능

가. 계약서 일반사항

계약서명		Agreement Record
계약 주체	주체 유형	공공기관 vs. 대학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기관 • B 대학
계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공동 • 비용부담: A 기관 • 소유: 공동연구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 시설의 소유에 대한 조항만 명시되어 있을 뿐,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성과물에 대한 소유 조항은 부재함 • 활용: 공동연구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나. 계약서 분석(비용·소유·활용)

1) 비 용

가) 비용 일반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IV. Research Fund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will be responsible for its own costs in relation to the conduct of its activities under the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in Korea. • A will contribute funding to the B research, which will be managed by B as agreed upon by the A. The amount to be sent to the account of B for the 1st year (2013) will be OOOOO Korean won. B will provide a summary report on the use of the funds and its documentary evidence, including receipts, where appropriate, to A before the end of October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detailed work plan and funding from A to B (or vice versa) for the second year of the project will be agreed upon by the two parties at least one month prior to the end of the first year of the project.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연구사업 중 한국 국내 사업비는 A의 경상 연구비로 수행 • 1차년도(2013년)에 A는 00백만원의 연구비를 B에 지원하고, B는 해당 연구비를 A의 동의하에 관리하며, 2013년 10월말 이전에 연구비 사용에 대한 요약서(영수증 포함)와 증빙서류를 검역본부에 제출 • 2차년도(2014년)의 연구추진 세부계획과 A에서 B에 (또는 B에서 A로) 제공되는 연구비는 1차년도 종료전 1개월 이내에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 1차년도 비용은 고정비용으로 설정한 후 사용 내역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였고, 2차년도 비용에 대하여는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구비의 적정수준을 유동성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용 공동부담 - 해당 없음

2) 소 유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quipment and facilities obtained in performing this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will remain the property of the purchaser.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연구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은 본 사업이 종료된 후 비용을 부담한 출자기관의 소유로 함 • 공동연구과정에서 취득한 기자재 및 연구시설에 대하여도 소유권 규정을 둬으로써 공동연구 종료 후 나타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 • Ⅷ연구결과에 대한 소유권 및 판권이라는 항목의 제목과는 달리 공동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성과물에 대하여 공동의 소유 또는 연구참여자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항목이 불분명함.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귀속을 보다 명확히 하여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나아가 성과에 기반한 특허의 출원 및 등록 권한에 대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

3) 활 용

가) 라이선스 부여 - 해당 없음

나) 스폰서에 대한 라이선스 허가 - 해당 없음

다) 지식재산의 보호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VIII. Ownership of the Output from the Project and Public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y contents, which relate to this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must not be provided to others or opened to the public without the permission of both A and B . When the reports or documentation concerning the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are compiled, it must be mentioned that the project has been conducted by A and the B as a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연구과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A와 B의 공동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음. 이 연구과제에 대한 보고서 또는 문서를 편찬할 때에는 이 과제가 A와 B의 공동연구로 수행되었음을 명기해야 함 연구과제과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공동승인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되므로 지식재산이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유출되는 것을 방지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VII. Exchange of Materials</p> <p>Any research materials of one party transferred to the other in connection with the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may only be used for the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and remain the property of that party.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research materials including the following information are to be considered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party providing the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chnical or trade information provided or disclosed from the other party relevant to the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in any form, whether as documentation,

	<p>photographs or machine readable format (including information processed by computers or information that can be transferred through computers), materials, samples, or information orally disclosed and specified as being confidential at the time of disclosu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earch results unpublished in scientific journals by the name of researchers as co-authors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상대 기관에 제공된 모든 연구자료는 해당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함 상대 기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1)공동연구와 관련하여 한 기관에서 상대기관에 제공된 모든 형태의 기술적 또는 교류 정보로 문서, 사진, 기계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 (컴퓨터로 처리된 정보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환되어야 하는 정보 포함), 제공당시 “기밀”로 지정된 연구 자료, 표본 또는 구두로 제공되는 정보; (2) 양 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공동 저자로 참여하여 학술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은 연구결과 관련 정보를 포함한 연구자료는 “기밀정보”로 간주 • 공동연구의 성과 외에도 연구자료에 대하여 기밀정보로 설정함으로써 성과만을 보호하는 경우보다 확대된 보호장치를 마련

라) 출 판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VIII. Ownership of the Output from the Project and Public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earchers of A and B must participate as co-authors in presentations (oral and poster) at conferences and papers on scientific journals published in relation to this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Coauthorship of reports, manuscripts, oral or poster presentations, shall be determined by the following criteria: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Each author should have participated sufficiently in the work represented by the articl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content. 2. Participation must include three steps: (1) conception or design of the work represented by the article, or analysis

	<p>and interpretation of the data, or both; (2) drafting the article or revising it for critically important content; and (3) final ap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lished.</p> <p>3. Participation solely in the collection of data (or other evidence) does not justify attribution of authorship.</p> <p>4. Each part of the content of an article critical to its main conclusions and each step in the work that led to its publications must be attributable to at least one author.</p>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연구과제의 결과와 관련된 학술대회 (구두 또는 포스터) 발표 또는 학술논문에는 양 기관 연구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함 보고서, 논문, 구두 또는 포스터 발표의 공동저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정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논문으로 발표는 연구에 상당부분 참여하였으며, 내용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 2. 참여는 다음의 3 단계를 포함 한다: (1) 논문으로 발표되는 연구의 설계, 또는 자료 분석 또는 해석, 또는 두 가지 모두; (2) 논문의 초안 작성 또는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및(3) 최종 버전의 대외발표에 대한 승인. 3. 단지 자료(또는 증거)의 수집단계에만 관여한 자는 저자가 될 수 없다. 4. 논문의 주 결론을 도출하는 부분 및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각 단계에 참여한 자는 저자가 될 수 있다. • 출판을 하는 경우에 공동저자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연구성과물의 공표에 따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부당한 제3자가 성과물을 통한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예방

가. 계약서 일반사항

계약서명		국제공동 R&D 국제계약 가이드라인
계약 주체	주체 유형	정부기구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주관기관, 해외참여연구기관
계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연구주관기관, 해외참여연구기관 • 비용부담: - • 소유: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개발한 지식재산은 해당 당사자에게, 본 연구를 통해 공동으로 개발한 지식재산은 공동으로 귀속됨 • 활용: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기존, 혹은 본 연구로 획득한 지식재산에 대한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무상의 실시권을 부여함

나. 계약서 분석(비용·소유·활용)

1) 비 용

- 해당 사항 없음

2) 소 유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서 조항(원문)</p>	<p>3. 지적 재산의 소유 및 사용</p> <p>0. INTELLECTUAL PROPERTY RIGHTS</p> <p>(1안)</p> <p>0.4 Any Foreground IP shall vest in Party A.</p> <p>0.5 Each Party grants to the other a non-exclusive, non-transferable and royalty-free license to use its Background IP for the purposes of conducting the Project.</p> <p>0.6 Party B grants to Party A an exclusive, transferable(with the right to grant a sublicense to third parties), royalty-free and perpetual license to use its Background IP to commercialize the Foreground IP.</p> <p>(2안)</p> <p>0.4 Any Foreground IP generated solely(without any contribu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ntribution on finance, materials or human resources, from the other Party) by either Party shall vest in the Party who generated such Foreground IP.</p> <p>0.5 Any Foreground IP generated jointly(with any contribu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ntribution on finance, materials or human resources) by both Parties shall vest jointly in Party A and Party B.</p> <p>0.6 Each Party grants to the other a non-exclusive, non-transferable and royalty-free license to use its Background IP and its (share of) Foreground IP for the purposes of conducting the Project.</p> <p>0.7 Party B grants to Party A an exclusive, transferable(with the right to grant a sublicense to third parties), royalty-free and perpetual license to use its Background IP and its (share of) Foreground IP to commercialize the Foreground IP.</p>
<p style="text-align: center;">해석</p>	<p>(1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주관기관(Party A)에 귀속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재산권에 대해 비독점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무상의 실시권을 부여한다. • 해외참여기관(Party B)은 연구결과물 사업화를 위해, 주관기관에게 기존 지식재산에 대한 독점적이고 양도 가능한 무상의 영구적 실시권을 부여한다. <p>(2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개발한 지식재산은 해당 당사자에게 귀속됨 • 본 연구를 통해 공동으로 개발한 지식재산은 공동으로 소유함 •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기존, 혹은 본 연구로 획득한 지식재산에 대한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무상의 실시권을 부여함 • 해외참여기관은 연구 결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경우, 기존 혹은 본 연구를 통해 획득한 지식재산에 대하여 주관기관에게 독점적이며 양도 가능한 무상의 영구적 실시권을 부여함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에 따라 1안 또는 2안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3) 활 용

가) 출판 및 공표

구 분	내 용
<p>계약서 조항(원문)</p>	<p>4. 출판 및 공표</p> <p>0. PUBLICATIONS</p> <p>0.1 Each Party to this Agreement recognizes that the publication of papers, including oral presentations and abstracts, relating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Agreement may be beneficial to both Parties, provided that such publications are subject to resonable controls to protect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Accordingly, each Party agrees that:</p> <p>(i)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or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other Party should be removed from any such publications prior to publication;</p> <p>(ii) copies of any proposed publication or presentation should be provided to the other Party at least</p>

	<p>thirty (30) days in advance of the submission of such proposed publication or presentation to a journal, editor, or other third party; and</p> <p>(iii) written permission should be obtained from the other Party prior to such publication.</p>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당사자는 출판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동의해야 한다. (i) 상대방의 비밀 정보나 지식재산은 출판 전에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ii) 제안된 출판물이나 증정본의 사본은 언론이나 제3자에 제공하기 적어도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한다. (iii) 출판 전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정보와 상대방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특히 출판 전에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대학의 경우 공동연구 결과물의 논문 출판 등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허용하는 것과 대비됨

가. 계약서 일반사항

계약서명		COLLABORATIVE RESEARCH AGREEMENT (CRA)
계약 주체	주체 유형	대학 vs. 대학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mple University(SU) • Cxx University in the city of New York(CU)
계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공동개발 • 비용부담: Sample University(SU) • 소유: 지식재산권의 소유는 발명자주의에 따름 공동으로 발명한 지식재산권은 CU와 SU에 균등하게 귀속됨 • 활용: 공동연구 성과물의 활용에 관한 규정 없음

나. 계약서 분석(비용·소유·활용)

1) 비 용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5. COSTS, BILLINGS, AND OTHER SUPPORT</p> <p>5.1 For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 SU will pay to CU a sum not to exceed US\$200,000. It is not allowed to purchase any equipment with funds provided by SU under this Agreement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from SU. CU will not incur expenses in excess of said amount, nor will SU be obligated to reimburse CU in excess of said amount unless a modification to this Agreement shall have been entered into by the parties hereto.</p> <p>5.3 CU will send invoices to SU according to the following schedule.</p> <p>At commencement of Project: Advance Payment of US\$150,000 (75% of total)</p>

	<p>Upon receipt of the final report and research results: US\$50,000 (25% of total)</p> <p>5.5 CU shall submit to SU a balance sheet within two months from the closing date of the contract period.</p>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는 CU에게 20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SU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장비의 구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CU는 상술한 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하지 않는다. 초과한 경우 SU는 초과금액을 CU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CU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SU에 대금을 청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금급 150,000달러(총비용의 75%) - 최종 보고서와 연구 결과 수령시 50,000달러(총비용의 25%) • CU는 계약기간 만료 두 달 전까지 대차대조표를 SU에 제출해야 한다.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한국 대학)가 비용을 부담

2) 소 유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8. INTELLECTUAL PROPERTY</p> <p>8.1 Ownership of IP</p> <p>8.1.1 IP ownership shall follow inventorship. Any Project IP jointly invented under the Project (hereinafter "Joint Project IP") shall vest jointly and equally in CU and SU. The Joint Project IP shall be deemed to be jointly owned (hereinafter, "Jointly-Owned Project IP"), only if the Patent Costs of the Joint IP are shared equally.</p> <p>8.1.2 With respect to the Jointly-Owned Project IP, each Party may independently license, enforce, collect royalties, make, use, sell, import, distribute, copy, and have made and otherwise enjoy benefits of such IP without any obligation of accounting to, obtaining permission from, or sharing royalties with the other joint owner. If one party does not pay costs of IP prosecution, it shall grant an exclusive license of its rights to the other party, with an exception to still allow the non-paying party the Jointly-Owned Project IP's use for research.</p>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의 소유는 발명자주의에 따름 공동으로 발명한 지식재산권은 CU와 SU에 균등하게 귀속됨. 특허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 경우에만 공동소유로 간주될 수 있음 • 공동소유의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각 당사자는 독립적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사용하고, 실시료를 받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의무나 허락 없이 수익을 얻거나 공동소유자들과 실시료를 공유할 수 있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할 경우에만 공동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에 ‘1) 비용’ 항목에 SU의 비용부담만 규정되어 있지만 SU가 연구에 따른 비용을 전부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됨

3) 활 용

가) 라이선스 부여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9. GRANT OF LICENSE</p> <p>SU grants to CU a non-exclusive, non-transferable, royalty-free license to use its Background IP, on an as need basis, solely for the purposes of conducting the Project.</p>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CU에게 기존 지식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무상의 라이선스를 부여함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사항 없음

가. 계약서 일반사항

계약서명		Collaborative Research Agreement
계약 주체	주체 유형	OOO vs. 대학
	당사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OOO
계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공동개발 • 비용부담: 협의 • 소유: 당해 협정하에서 양 당사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얻어진 연구 결과는 양자의 공동소유로 함 • 활용: 공동연구 성과물에 대한 라이선스 규정인지는 불명확하나,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특허권 라이선스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규정 명시되어 있음

나 계약서 분석(비용·소유·활용)

1) 비 용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ARTICLE 9 TERMINATION</p> <p>9.4 In the event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for any reasons, both Party shall settle the Budget for the Collaboration as set for in Appendix B with referring to the Budget executed. For example, a Party shall pay a deficit to the other Party or pay the balance to the other Party.</p>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떠한 이유로든 협정이 종료되면 양 당사자는 예산 운영에 관한 부록B를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적자를 보전해 주거나 잔액을 지불하여야 함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이 종료되는 경우에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협상의 종료에 따른 예산처리 분쟁 가능성을 방지

2) 소 유

가) 소유 일반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ARTICLE 3 INVENTORSHIP AND OWNERSHIP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he research results obtain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jointly owned by both Parties, provided that the research results are jointly created, made or developed by both Partie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es rights in relation to patents, patent applications, copyright, trade marks, designs, business and domain names, trade secrets, know how and other results of intellectual activity in the industrial, commercial,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fields (including the right to apply for registration of any such rights).
해석	• 본 계약에서 양 당사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얻어진 연구 결과는 양자의 공동소유로 함
분석	•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물에 대해서만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ARTICLE 4 PATENTS 4.1 _____. In the event that patents or patent applications are solely developed or invented by a Party, those shall be solely owned by the developing or inventing Party. In the event that patents or patent applications are jointly developed or invented by a Party, those shall be jointly owned by both Parties. _____.
해석	•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개발된 사항에 관한 특허 또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개발 당사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며, 공동으로 개발된 사항에 관한 특허 또는 특허출원은 양 당사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됨
분석	• 국제공동연구의 성과에 대하여 특허 또는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귀속되도록 일반적인 형태로 규정

3) 활 용

가) 라이선스 부여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ARTICLE 5 LICENSING</p> <p>5.4 Commencing after the first receipt of Income by IACF from Licensing of Joint Invention and continuing for as long as this Agreement is in effect, IACF will pay to INSTITUTION an agreed percentage of net income from licensing only if INSTITUTION is involved in patent applications or patents as patent owner. The agreed percentage of net income may be determined in considering a share of the owners for the Joint Patents or Patent Application, patent prosecution expenses and expenses rendered to licensing</p>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화 이후 공동발명의 실시권으로부터 첫 번째 수입이 발생한 경우, 기관이 특허 소유자로 특허 출원 또는 특허에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기관에 대하여 동의에 의해 결정된 순수익의 일정비율의 몫을 지불해야 함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이 특허와 관련된 경우라면 공동개발에 의한 공동소유 성과물의 특허 및 특허출원도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공동연구개발 성과에 관한 실시를 통하여 얻게된 수입의 경우는 상대방에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임

나) 지식재산의 보호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ARTICLE 6 CONFIDENTIALITY</p> <p>6.1 All information, data, results, inventions, trade secrets, techniques, material, or compositions of matter of any type or kin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ll know-how and all other scientific, pre-clinical, regulatory, manufacturing, marketing, personnel, financial, legal, and commercial information or data, whether communicated in writing, orally, or by any other method, disclosed by one Party to the other Party hereunder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be maintained in confidence by the receiving Party and shall not be disclosed to any Third Party or used for any purpose except to exercise</p>

	its rights and perform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disclosing Party, except to the extent that the receiving Party can demonstrate by competent written evidence that such information:
해석	• 기밀 정보사항에 모든 정보도 포함되며 제3자와 연구 목적외에는 공개 또는 제공될 수 없다고 명시함
분석	• 공동연구개발의 성과도 기밀정보에 포함된다고 보이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나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아 지식재산의 보호가 가능

다) 출 판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ARTICLE 7 PUBLICATION Each party will have the right to make a written publication related to research results arising from the Collaborative Research after obtaining a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non-publishing party. The publishing party shall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a copy of any manuscript or other proposed publication at least thirty (30) days before it is submitted for publication. The publishing party shall delay submission of any publication at the request of the non-publishing party, for up to an additional sixty (60) days after receipt by the non-publishing party of the proposed publication, in order to permit filing of appropriate patent applications.
해석	•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동의를 얻은 후에 출판 을 할 권리를 갖게 된다. 또한 출판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두어 상대방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분석	• 출판을 통해 활용가능한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 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함

가. 계약서 일반사항

계약서명		공동연구계약서 - △△△에 관한 연구
계약 주체	주체 유형	000 vs. 대학
	당사자	000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공동개발(대학 주도) • 비용부담: 000 • 소유: 공동연구 성과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공동소유로 함 • 활용: 공동연구 결과물로 인한 특허가 발생한 경우 갑이 학교의 지분을 양수함으로써 특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을 명시(학교 소유 추정)

나. 계약서 분석(비용·소유·활용)

1) 비 용

가) 비용 일반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제 6 조 (“연구”의 대가 및 지급 방법) 1) “연구”의 대가는 본 계약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_____원 (VAT없음)으로 한다. 2) “연구”의 대가는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가) 계약금: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의 금액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잔금: 을이 최종보고서 등 결과물을 갑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의 금액의 2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대가에 대하여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갑이 을에 대하여 연구 후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모델에 해당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제 5 조 (지적 재산권 및 결과물 귀속) _____. 단, 출원시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별도로 부담한다. _____.
분석	•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출원 비용은 후원자가 부담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제 10 조 (계약의 해지 및 변경) 3) 해지협의 본 조 제 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을”은 해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시까지의 연구비집행정산서 및 해지시까지의 연구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시점까지 연구를 위하여 을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기사용된 연구비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부족한 금액은 갑이 을에게 추가 지급하며 잔액은 을이 갑에게 반환한다.
분석	•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연구비를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해지에 따른 비용정산의 문제를 규정에 의해 해결하도록 함

2) 소 유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제 5 조 (지적 재산권 및 결과물 귀속) 본 계약에 따른 “연구”의 결과로 발생한 연구보고서와 그 내용 및 결과물에 대한 권리, 각종의 지적재산권은 모두 “갑”과 “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_____.
분석	• 공동연구 성과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공동소유로 함

3) 활 용

가) 스폰서에 대한 라이선스 허가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3) 갑은 본 계약으로 인한 연구 결과물로 특허가 발생한 경우 학교의 지분을 양수한다. 양수대금은 _____ 원(VAT 별도)로 한다.</p> <p>4) 갑이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품화에 성공할 경우 갑은 매출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 매년 을에게 매출액 대비 __%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지급한다. 또한 갑이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시를 허락하여 라이선싱 기술료를 받게 되는 경우 갑은 상기 제3자로부터 받은 라이선싱 기술료의 __%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가 발생한 경우 갑이 학교의 지분을 양수함으로써 특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소유권 분쟁의 발생을 방지 • 라이선스 허가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규정

나) 지식재산의 보호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제 8 조 (제3자 양도불가)</p> <p>갑은 본 연구계약을 통해 을이 갑에게 제공한 모든 유형, 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성과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성과가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

다) 출 판

구 분	내 용
<p>계약서 조항(원문)</p>	<p>제 7 조 (비밀 보장 및 명칭의 사용) 4) “갑”은 광고, 선전, 판매 촉진, 기타 목적을 위하여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인용하거나 과제 성과를 신문, 잡지, 인터넷, 기타 언론매체, 자사 홈페이지에 보도/제공/게재하지 아니한다.</p>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출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출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대학이기 때문에 논문 게재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발표를 금지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음

국제공동연구 협약서
농촌진흥청과 000(상대국 및 연구기관)

가. 계약서 일반사항

계약서명		국제공동연구 협약서
계약 주체	주체 유형	연구기관 vs. 000
	당사자	농촌진흥청 - 000
계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공동수행 • 비용부담: 공동부담 • 소유: 일반적인 공동연구 협약의 경우와 같이 성과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소유 • 활용: 공동연구 결과물(새로운 지식재산)에 대한 무상 실시와 유상실시의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

나. 계약서 분석(비용·소유·활용)

1) 비 용

가) 비용 일반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4. 연구비</p> <p>가. 대한민국 측 출연</p> <p>(1) 농촌진흥청은 본 과제를 위하여 당해연도 연구비로 미화 _____ 불을 (상대측 연구 기관)에 출연하며, 연구계획서상의 차년도 출연 연구비는 과제내용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배정될 수 있으며, 또한 한국 원화의 환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한다.</p> <p>(2) 생략</p> <p>(3) (상대측 연구기관)은 매년 한국측 출연 연구비 사용명세서를 매년차 만료 2개월 이내 (완결과제의 경우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나, 보고 시기는 상대국의 회계연도에 따라 협의 조정될 수 있다.</p> <p>(4)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는 (상대측 연구 기관)에 귀속되며, 사업 종료시점까지 사용되지 않은 연구비는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에 반환한다.</p>

	<p>나. 상대측 측 출자</p> <p>(1) (상대측 연구기관)은 본 과제를 위하여 __년간 미화 총_____불 (현물_____불 상당)을 출자한다.</p> <p>(2) 본 협약서에 의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상대측 연구기관) 연구원의 인건비는 출자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를 미화로 지불하며 환율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에 양해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원화로 출연금을 고정시켜 지불하는 것이 연구비용 운영상의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제공받은 자금의 이자에 관한 귀속을 규정한 것과 사용되지 않은 연구비 반환을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며, 일방이 아니라 당사자 모두가 현물출자가 가능함을 명시 할 필요가 있음

나) 비용 공동부담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5. 연구원 교류</p> <p>가. 한국 측 연구원을 현지 과제수행을 위하여 (상대측 연구기관)에 파견할 수 있으며, 항공료는 한국 측, 체재비는 상대 측에서 부담한다.</p> <p>나. (상대측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우리측 연구기관)을 방문할 수 있으며, 항공료는 상대 측, 체재비는 한국 측에서 부담한다.</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동연구 협약의 취지에 맞게 연구원의 교류에 대한 비용부담은 상호 대등하게 규정

2) 소 유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6. 산업재산권과 발생품의 귀속 및 기술사용료 징수</p> <p>가. 본 과제를 통하여 얻어지는 재료 및 결과는 (우리측 연구기관) 과 (상대측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이것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양측이 합의하여야 한다. _____,</p> <p>나. 본 공동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 특허 및 지적소유권은 (우리측 연구기관)과 (상대측 연구기관)이 각각 50%와 50%(과제에 따라 상대측과 협의 조정)의 비율로 소유한다.</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공동연구 협약의 경우와 같이 성과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며, 성과에 대한 각종 권리는 비용의 부담여부와 무관하게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정에 따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 않을 경우 위험 부담이 있음
----	--

3) 활 용

가) 라이선스 부여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6. 산업재산권과 발생품의 귀속 및 기술사용료 징수</p> <p>다. (우리측 연구기관)과 (상대측 연구기관)은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위의 연구결과를 자체 실험실에서 사용할 경우, 새로운 지적소유권에 대한 특허료를 내지 않고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p> <p>라. (우리측 연구기관)과 (상대측 연구기관)은 본 연구결과에 따른 재산권, 특허 및 지적소유권 등을 이용하여 기술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각기 자국 영토 내에서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제3자(국)에 대해서는 6조 나항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라 권리를 갖는다.</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 실시와 유상실시의 경우를 구분

나) 지식재산의 보호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8. 기타 공동연구사업에 수반되는 사항</p> <p>나. 연구결과의 발표 및 광고</p> <p>본 연구과제의 결과는 상대 측의 동의 없이 어느 일방에 의해 발표될 수 없고, 상대 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연구결과를 연구논문, 신문보도, 상업광고 등에 발표할 때에는 상대 측이 크게 공헌하였음을 자발적이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제를 발표함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은 동의를 해야 하므로 연구성과에 대한 출판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출판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음

다) 출 판

구 분	내 용
<p>계약서 조항(원문)</p>	<p>6. 산업재산권과 발생품의 귀속 및 기술사용료 징수</p> <p>가. _____ . 본 연구의 결과를 보고서 및 논문으로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우리측 연구기관) 및 (상대측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로 수행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p>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판을 하는 경우 일방에 의하여 발표될 수 없으며, 공동연구로 수행되었음을 명시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되거나 제3자에 의한 오인 가능성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가. 계약서 일반사항

계약서명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계약 주체	주체 유형	연구기관 vs. 000
	당사자	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 000
계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공동개발 • 비용부담: 연구비 부담자는 협의에 의해 결정되나, 연구비를 일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임 • 소유: 규정 불분명함 • 활용: 연구비를 부담한 당사자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비독점적, 무상실시권을 가짐

나. 계약서 분석(비용·소유·활용)

1) 비 용

가) 비용 일반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7. PAYMENT</p> <p>Party A shall pay to Party B the costs of the Research up to but not in excess of [DOLLARS] [\$], which could be payable installments in accordance with Schedule "B".</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당사자는 B당사자에 대하여 \$000를 초과하지 않는 연구비용을 지불, 당해 연구비는 당사자B의 일정에 따라 분할지급이 가능 • 비용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며, 비용지불수준에 대하여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규정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연구비를 설정함과 동시에 지급 분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연구를 수행하는 주체에 대하여도 계획성 있는 연구비의 지출이 가능하도록 함

2) 소 유 - 공동연구성과에 대한 소유가 불분명

3) 지식재산의 활용

가) 활용 일반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6. OWNERSHIP OF INVENTIONS AND TECHNOLOGY 6.2 _____. Party B will have non-exclusive license to exercise the invention and technology resulted from the research, as well as right to publish the result in academics journals, which must be expressly approved by party A. The party B must have a written confirmation before proceeding with patent application in any venue.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B는 연구의 결과로서 발명과 기술을 실행하기 위한 비독점적인 라이선스권을 갖고, 당사자 A의 승인을 받아 학계에 결과를 출판할 수 있는 권리도 보유 • 당사자 B는 어떠한 장소에 특허출원을 진행하기 전에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함 • 지식재산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사항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구분을 통해 활용과 성과의 보호가 분명히 구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6.3 Party B shall have a non-exclusive, royalty-free right to use all data, discoveries and inventions generated by the Research that are not included in copyrights, issued patents, claims of patent application, or intellectual property which is of a trade secret nature but has not yet become the subject of patent or copyright protection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B는 연구에 의해 발생한 모든 정보나 발견 및 발명에 대하여 아직 특허나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않은 영업비밀에 관한 지식재산권, 저작권, 출원된 특허, 특허출원의 청구항을 포함하지 않는 비독점적, 무상실시권을 보유 • 당사자가 갖는 실시권에 대하여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여 지적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범위를 축소시킴과 동시에 부당한 이익을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나) 지식재산의 보호

구 분	내 용
<p>계약서 조항(원문)</p>	<p>6. OWNERSHIP OF INVENTIONS AND TECHNOLOGY</p> <p>6.2 The party A has the right to prepare, file and prosecute any Korean and foreign device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any Intellectual Property resulting.</p> <p>_____.</p>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A는 지식재산 결과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장치에 관하여 준비하고 출원과 등록하는 권리를 가짐 • 일방 당사자에게 성과의 보호를 위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공동연구 성과에 대하여는 참여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결과물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계약서 일반사항

계약서명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계약 주체	주체 유형	연구기관 vs. 대학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대학 • B 기관
계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대학 • 비용부담: B 기관이 특허출원, 특허권 심사, 관리, 실시로 인한 비용을 100% 부담 • 소유: 소유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A대학의 모든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인정함 • 활용: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 규정만 제시되어 있을 뿐, 실시권 및 라이선스 부여와 같은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나. 계약서 분석(비용·소유·활용)

1) 비 용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BACKGROUND</u> …… A wishes to appoint B as its agent for the sole purpose of seeking and maintaining patent protection and licensees for the INVENTION on a worldwide basis. …… • 2.2 B shall bear 100% of the costs for patent filing, prosecution, maintenance and enforcement of the PATENT RIG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 On or before January 31 of each year, B shall distribute to A 50% of NET REVENUES accrued during the most recently completed calendar; provided that if B makes distributions to its inventors on account of NET REVENUES more frequently than annually, it will concurrently with such distributions pay A its 50% share of NET REVENUE for the applicable period. • 4.2 Each party is solely responsible for calculating and distributing to its respective Inventors any share of NET REVENUES due in accordance with its respective policies.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대학은 해당 발명에 대해, 전세계의 라이선스 발굴 및 유지, 특허 보호를 위한 에이전트로 B 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 B 기관이 특허출원, 특허권 심사, 관리, 실시로 인한 비용을 100% 부담 • 매년 1월 31일까지 B 기관은 A대학에 전년도에 발생한 순수익의 50%를 지급 • 소속 발명자들에 대한 순 수익의 계산과 분배는 각 당사자가 각자의 정책에 따라 독립적으로 책임을 짐 • B 기관이 특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볼 때 공동연구계약이지만 배경(background)에 언급된 것처럼 에이전트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소 유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서 조항(원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 B agrees that A will have the exclusive right (including under B's interest) to license such patent applications and resultant patents in any country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or contribution to B; this provision shall surviv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대학이 B 기관의 참여나 기여 없이 특허출원이나 결과물인 특허에 대해 모든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보유 • 발명의 소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특허에 대해 A 대학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

3) 활 용

구 분	내 용
<p>계약서 조항(원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 B shall diligently seek a LICENSES for the worldwide commercialization of the Inventions and Patent Rights. • 3.5 A shall have the right to review, comment upon, and approve a substantially final draft of any License Agreement or amendment thereto. Such approval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or delayed. A agrees that if it does not provide objections or comments within fifteen (15) business days of its receipt of the draft agreement, A shall be deemed to have approved it. A agrees that the only reasonable grounds for withholding approval are non-conformance of the agreement with the License Requirements, the provisions set forth in Section 3.8 below and reasonable legal considerations. • 3.6 If a license/option is to include equity, B will consult with A regarding any requirements it may have regarding agreement language or the treatment of its share of the equity. • 9.1 Subject to each party's state law, B and A respectively shall hold the other party's proprietary business and patent prosecution information in confidence using at least the same degree of care as that party uses to protect its own proprietary information of a like nature. The disclosing party shall label or mark confidential, or as otherwise appropriate, all proprietary information and disclose it only to the other party's technology licensing office (e.g. in the case of disclosures by B, to A's Technology Ventures Office). Neither party will have any obligations under this Section 9 with respect to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other party to anyone who is not a member of the party's technology licensing office. If proprietary information is orally disclosed, the disclosing party shall summarize the proprietary information in writing and deliver it to the receiving party within thirty (30) days of the oral disclosure, labeled as set forth above. • 9.3 In the event one of the parties shall desire to publish a manuscript relating to the INVENTIONS, the publishing party shall provide the other parties with a copy of

	<p>such manuscript thirty (30) days prior to submission of such manuscript for publication for purposes of protecting proprietary or intellectual property that might be contained in such manuscript.</p>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기관은 발명과 특허권의 세계적인 상업화를 위해서 실시권자를 찾는 데 노력해야 함 • A대학은 라이선스 계약과 수정된 최종안을 승인하고 검토할 권리를 가짐 • 라이선스/옵션이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B 기관은 A대학과 상담하여 주식 공유 관리에 대한 요건을 협의해야 함 • B 기관과 A대학은 각자의 법에 따라 상대방의 등록 사업과 특허 정보에 대해 자신의 것과 동일한 정도로 보호를 해야 함 • 당사자 일방이 발명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싶을 경우에는 공개 당사자는 공개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공개할 자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 B 기관의 의무사항과 A대학의 권리를 규정 • 비밀보호에 대해서는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규정

사례 12.

Agreement for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for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and border security
미국 정부, 캐나다 정부

가. 계약서 일반사항

계약서명		Agreement for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for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and border security
계약 주체	주체 유형	정부 vs. 정부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The government of canada
계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공동개발 • 비용부담: 각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 대한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며, 공동 연구 행위에 대한 비용은 공유 부담함 • 소유: 공동연구활동으로 인한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소유 및 할당 관련 규정 확인하기 어려움 • 활용: 규정 없음

나. 계약서 분석(비용·소유·활용)

1) 비 용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ARTICLE IX FINANCE</p> <p>1.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ed funds for Cooperative Activity, each Party shall bear the costs of discharging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is Agreement.</p> <p>2.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ed funds, the Parties may also agree to share costs for Cooperative Activity.</p> <p>3. In its Project Authorizations, each Party shall determine how to allocate costs incurred on behalf of the authorizing Party.</p> <p>4. This Agreement creates no standing financial commitments. Detailed descriptions of the financial provisions for Cooperative Activity, including the total cost of the activity and each Party's</p>

	<p>or Participant's cost share, will be agreed between the Parties.</p> <p>5. Each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audit of its activities in support of Cooperative Activity, including the activities of any of its Participants. Each Party's audit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its own national practices.</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정된 자금의 유용성에 따라, 각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 대한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며, 공동 연구 행위에 대한 비용은 공유 부담함 • 공동연구 수행 총비용과 해당 비용 부담에 대한 공유 사항 등에 대한 세부 결정은 각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짐 • 비용 부담에 대하여 추상적인 합의 사항만 확인 가능하며, 명시적인 비용 부담자를 파악할 수 없음

2) 소 유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ARTICLE X INTELLECTUAL PROPERTY</p> <p>1.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alloca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creat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on the Allo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rests and Royalties for Intellectual Property Created or Furnished under Certai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ve Research Activities (with attachment), done at Ottawa, February 4, 1997.</p> <p>2. The use and distrib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creat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the security provisions of Article XIII.</p> <p>ARTICLE XIII SECURITY</p> <p>1. Cooperative Activity undertaken pursuant to this Agreement may include the use and exchange of classified information or equipment, as defined in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for the Exchange of Classified Information, done at Washington, January 30,</p>

	<p>1962, and including the Industrial Security Procedures of 8 February 1985 (collectively, the “General Security Agreement”).</p> <p>2. Each Party shall store, handle, transmit and safeguard all classified information and Equipment and Material provided or generat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Security Agreement.</p> <p>3.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ccess to classified information and Equipment and Material is limited to those persons who possess requisite security clearances and have a specific need for access to the information and/or Equipment and Material.</p> <p>4.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ny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quipment and Material, including classified information and Equipment and Material between Participants or between Parties and Participant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u>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Party</u> to prevent the unauthorized transfer or retransfer of such information and Equipment and Material provided or produced under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 incorporates this principle into Project Authorizations.</p> <p>a. If either Party deems it necessary, detailed provisions for the prevention of unauthorized transfer or retransfer of information and Equipment and Material shall be incorporated into Project Authorizations.</p> <p>b. If either Party deems it necessary, additional distribution and access restrictions on information and Equipment and Material shall be incorporated into Project Authorizations.</p> <p>5. Each Party shall take all lawful steps available to it to ensure that information and Equipment and Material provided or generat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is protected from further disclosure, unless the other Party consents to such disclosure.</p>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된 지식재산의 보호 및 할당에 대한 내용은 1997년 행해졌던 과학 및 기술 연구 계약상의 해당 규정을 따름 •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정보, 기구, 재료 등의 교환에 대한 규정은 각 당사자의 관련법 및 규정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당사자는 그러한 자료들이 공지됨을 서로 동의하지 않는 한, 연구수행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공동연구활동으로 인한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소유 및 할당 관련 규정 확인하기 어려움 •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자원 교류 시 따라야 할 규정을 각 당사자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함으로써, 각 당사자의 규정이 다를 시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3) 활 용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규정 없음
해석	-
분석	-

사례 13.	Agreement for cooperation on a joint clean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미국 에너지부, 인도 정부
--------	---

가. 계약서 일반사항

계약서명		Agreement for cooperation on a joint clean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계약 주체	주체 유형	정부 vs. 정부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department of ener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The planning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india
계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공동개발 • 비용부담: 공동연구가 아닌 개별적으로 수행된 연구에 대한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함. 공동연구 비용에 대한 내용 없음 • 소유: 타 계약서에 따름 • 활용: 규정 없음

나. 계약서 분석(비용·소유·활용)

1) 비 용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VI. Funding Mechanism</p> <p>1.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funds authorized and made available by each Party's government and subject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funding for the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borne by the Parties, to help ensure the long-term and stable financial support to move the objectives of the Center forward. Private industry and academia also may provide funding in accordance with the written terms to be agreed to by the Parties.</p> <p>2. The Planning Commission shall fund only research performed by Indian participants, and USDOE shall fund only research performed by United States participants. in</p>

	<p>collaborative activities, unless agreed otherwise by the Parties for specific projects. The Parties may also explore and establish additional funding, mechanisms as mutually agreed.</p> <p>3. Each Party shall conduct the activities under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interpreted to constitute an obligation of funds.</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당사자에 의해 합의 된 서면 규정에 따라 민간 기업과 학계에서도 자금을 제공할 수 있음 • 공동연구가 아닌 개별적으로 수행된 연구에 대한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 • 정부 간의 공동연구 활동에서 민간 기업 및 학계에서의 자금 지원이 행해질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이함 • 공동연구에 대한 비용 부담, 자금 지원에 대한 규정 없음

2) 소 유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VII. Information Sharing and Intellectual Property</p> <p>1. The protection and allo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created or furnish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nex I (Intellectual Property) to the S&T Agreement.</p> <p>2. Each Party shall make available to the other technical information first produced under projects under this Agreement that is (1) relevant to or necessary for projects under this Agreement; and (2) either in the Party's possession or available to it, and which it has the right to disclose.</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약 하에 생성된 지식재산의 할당 및 보호에 관하여는 타 계약서(S&T agreement)에서 규율됨 • S&T 계약서 검토가 필요

3) 활 용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규정 없음
분석	-

가. 계약서 일반사항

계약서명		Research Collaboration Agreement
계약 주체	주체 유형	대학 vs. 기업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versidad Peruana Cayetano Heredia • Salix Pharmaceuticals, Inc
계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공동연구개발 • 비용부담: 기업(Salix Pharm, Inc.) • 소유: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개발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소유 • 활용: 독점실시권 및 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규정 명시

나. 계약서 분석(비용·소유·활용)

1) 비 용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2. Salix Support</p> <p>Salix shall provide Institution with a grant of financial support for the conduct of the Project as follows :</p> <p>A. Salix shall cover the costs of the Institution and/or Principal Scientists purchase and shipment of a Dell dual processor server to be dedicated solely to the Project while the Project is ongoing; provided that such costs shall not exceed US\$5,000,000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Salix. Such server shall have the specifications mutually agreed upon by Salix and the Principal Scientists. Salix shall pay the actual final costs of such purchase, including shipping to the Principal Scientists, directly to Dell on behalf of the Institution/Principal Scientists. If such direct third-party payment is not possible, Salix shall pay such sum to Institution who will use the funds to complete such purchase.</p>

	B. Salix shall cover the costs of the Institution and/or Principal Scientists securing academic licenses to the Insight II Computer software Program to be used in the Project; provided that such costs shall not exceed US\$5,000,000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Salix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대학소속 과학자들의 연구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며 그 금액은 기업의 승인 없이는 최대 500백만 달러를 넘지 못함 •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기업이 직접 판매자에게 지불하지 못함 •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기업이 부담하도록 규정 • 비용을 제3자에게 직접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구비용의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2) 소 유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3. PATENTS RIGHTS</p> <p>A. Ownership</p> <p>ii. Patent rights to an Invention made Jointly by employees or agents of Salix and Institu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Principal Scientists(“Joint Invention”) shall be held jointly by Salix and Institution. In the event that under applicable law the Principal Scientists have some claim to ownership in such and invention, they hereby assign all such ownership interest to Institution.</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개발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소유 • 공동연구 성과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공유가 됨

3) 활 용

가) 라이선스 부여

구 분	내 용
<p>계약서 조항(원문)</p>	<p>3. PATENT RIGHTS</p> <p>C. Licensing</p> <p>The Principal Scientists and the Institution shall promptly notify Salix of the development of any Non-Salix Invention, With respect to any Non-Salix Invention and with respect to the Institution interest in any Joint Invention, Institution shall promptly offer Salix an exclusive worldwide license, with the right to sublicense, under any patent applications, patents or know-how covering such Non Salix Invention and/or the Institution' interest in any Joint Invention, and shall make diligent efforts to negotiate in good faith and conclude, during the six(6) month period following the date of its offer, an agreement with Salix regarding such a license on commercially reasonable terms. Salix shall inform institution with sixty (60) days from the date of disclosure of a Non-Salix invention, or the development of any Joint Invention whether Salix wishes to obtain such a license. Only if Salix elects not to obtain such a license or the parties are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within the six(6) month period can the Institution offer any right to any third party in or to the Invention. Further, in such a situation, Salix shall have a right of first refusal to accept any terms offered by the institution to any third party for any rights in or to the Invention.</p>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Salix 발명과 공동연구와 관련한 기관(대학의 부설기관)의 발명에 대하여, 기관은 합당한 기간을 두어 재실시권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독점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음 • 또한, 제3자에게도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 공동성과에 관하여 실시권을 부여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보장하도록 하여 실시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3자에게도 실시권을 부여하도록 하여 실시권의 행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위험을 방지

나) 출 판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서 조항(원문)</p>	<p>5. Publication Rights</p> <p>Institution and the Principal Scientists shall have the right, consistent with academic standards, to publish or present the results of the Project, provided such publication or presentation does not disclose Confidential Information or other proprietary trade secrets of Salix. Institution will submit the manuscript of any proposed publication(including abstracts, or presentation to a journal, editor, meeting, seminar, or other third party) to Salix at least thirty(30) days before publication, and Salix shall have the right to review and comment upon the proposed publication. Upon Salix's request, publication will be delayed up to sixty(60) additional days to enable Salix to secure, adequat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property of Salix that could be affected by said publication. Salix shall have the right to require the deletion of any trade secret, or proprietary or confidential information of Salix. Any publication or disclosure by Institution or the Principal Scientists shall give appropriate credit to Salix.</p>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과 주요 과학자들은 학술기준에 맞추어 공동연구 결과에 대하여 기업의 기밀정보를 제외하고 출판이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권리를 갖음. 다만, 이러한 출판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 일정 기간을 두어 기업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기업은 중요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전 검토를 통해 공동연구 성과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기업이 특정 정보에 대하여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한 것으로 보임

가. 계약서 일반사항

계약서명		COLLABORATIVE RESEARCH AGREEMENT
계약 주체	주체 유형	기업 vs. 연구기관(민간)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ISTOL-MYERS SQUIBB COMPANY • ACADEMIC MEDICAL CENTER
계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공동개발 • 비용부담: 공동연구 비용에 대한 규정 부재(단, 공동 발명품에 특허 출원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을 AMC측이 상환하는 걸로) • 소유: 공동발명품 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기존 미국 특허법에 근거하여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단, 기술적 발명에 대하여 공동연구 참여자를 고려하여 소유권이 귀속됨 • 활용: 공동발명성과에 대하여 특허출원 제출에 관한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함

나. 계약서 분석(비용·소유·활용)

1) 비 용

가) 비용 일반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8.4 Patents on AMC Inventions .</p> <p>8.4.2 Company shall reimburse AMC for all costs of filing, prosecuting, responding to opposition (including interference proceedings), and maintaining Patents on AMC Inventions in countries where Company requests or agrees that Patents should be filed, prosecuted and maintained. Company may request that AMC employ the Company’s preferred patent agents in such countries as Company requests that AMC should file, and AMC shall</p>

	<p>do so where reasonable possible and agrees that Company may be directly invoiced by such agents. Company may, upon sixty (60) days written notice, request that AMC discontinue filing, prosecuting, responding to opposition, or maintaining Patents in any such country and, upon expiration of such sixty (60) day period, discontinue reimbursing AMC or paying for the costs of filing, prosecuting, responding to opposition or maintaining such Patent in any country. Subject to the foregoing, AMC will be free to continue, at its own expense at the end of such sixty (60) day period, to file, prosecute, respond to opposition and/or maintain such Patent.</p>
<p>해석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C 발명품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회사측에서 AMC의 특허를 타국에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됨 •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의 특허를 활용하는 경우 자신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음. 이는 상대방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특허를 통한 잠재적 이익의 확보가 가능

나) 회사 부담

구 분	내 용
<p>계약서 조항(원문)</p>	<p>8.5 Patents on COMPANY Inventions. Company shall have the right to file patent applications covering any COMPANY Invention in its sole discretion. Company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the prosecution and maintenance of all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s claiming the Company Inventions and all costs related thereto.</p>
<p>해석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는 모든 특허출원 및 이와 관련된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과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됨 • 자신의 특허에 대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

다) 공동개발에 대한 비용부담

구 분	내 용
<p>계약서 조항(원문)</p>	<p>8.6 Patents on Joint Inventions 8.6.4 AMC shall reimburse Company for all costs of filing, prosecuting, responding to opposition (including interference proceedings), and maintaining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s on Joint Inventions filed under Section 8.6.3 in additional countries where AMC requests that Patent applications be filed, prosecuted and maintained. AMC may, upon sixty (60) days written notice, request that Company discontinue filing, prosecuting, responding to opposition, or maintaining Patent applications or Patents in any such country and, upon expiration of such sixty (60) day period, may discontinue reimbursing Company for the costs of filing, prosecuting, responding to opposition or maintaining such Patent application or Patent in any country. Subject to the foregoing, Company will be free to continue, at its own expense at the end of such sixty (60) day period, to file, prosecute, respond to opposition and/or maintain such Patent application or Patent.</p>
<p>해석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C는 회사가 부담한 공동 발명품에 특허출원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을 상환 • 공동의 발명품에 대한 비용부담을 상환규정을 통해서 향유하게 될 이익과 비용의 균형을 담보하며, 비용상환의 예외를 통해 불합리한 비용부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2) 소 유

가) 소유 일반

구 분	내 용
<p>계약서 조항(원문)</p>	<p>8. Intellectual Property Ownership and Patents 8.2 Ownership of Technical Developments (and the Patents, if any, which claim such Technical Developments)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origin of the Technical</p>

	<p>Developments, and, in case of inventions, by inventorship (as defined under U.S. patent law at the time the invention is made), i.e.:</p> <p>8.2.1 Shall belong to AMC, if the inventors are one or more employees of AMC and none of the inventors are employees of Company (“<i>AMC Invention</i>”),</p> <p>8.2.2 Shall belong jointly to AMC and Company, if the inventors are one or more employees of AMC and one or more employees of Company (“<i>Joint Invention</i>”), and</p> <p>8.2.3 Shall belong to Company, if the inventors are one or more employees of Company and none of the</p>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 발명에 대하여 공동연구 참여도를 고려하여 소유권이 귀속됨 • 공동연구 당사자 일방이 발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발명이 됨 • 공동발명의 경우 양 당사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성과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게 됨 •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소유권의 귀속은 성과의 귀속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참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참여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을 경우 분쟁 가능성이 존재

다) 공동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서 조항(원문)</p>	<p>8. Intellectual Property Ownership and Patents</p> <p>8.6.5 Patents on Joint Inventions after Company Declines to Exercise Option. In the event that Company declines to exercise its option to acquire a worldwide-royalty-bearing, exclusive license to a Joint Invention under Section 9.2, or such option expires without Company having acquired such a license under the Option, then AMC shall have the right, but not the obligation, to file patent applications covering such Joint Invention, exercisable at AMC’s sole election; in such circumstances, if AMC proceeds with patenting Joint Inventions, Company shall retain any rights it may have as a joint owner under existing US patent law.</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발명품 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기존 미국 특허법에 근거하여 공동소유함 • 공동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성과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유형에 해당함
----	--

3) 활 용

가) 활용 일반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8.6.1 AMC and Company shall confer regarding the filing of patent applications on Joint Inventions. Company shall have the right to file Patent applications covering any Joint Invention using the Company's preferred patent agents. AMC shall have the right to review all patent applications on Joint Inventions and to provide Company with substantive comments.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발명성과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할 경우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 • 회사는 공동발명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을 할 권리를 갖으며, AMC는 발명품의 모든 특허출원을 검토할 권리를 가짐 • 당사자간의 협의와 사전검토를 통해 특허출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성과의 활용에 관한 분쟁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연구 및 교육적 라이선스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9.1 Research and Educational Licenses.</p> <p>9.가.1 AMC grants to Company and the Company's Affiliates a non-exclusive, world-wide, perpetual, non-cancelable, royalty-free, fully paid-up license under AMC's rights in Technical Developments, including its rights in AMC Inventions and Patents covering such AMC Inventions, to use the Technical Developments for inter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urposes only. The foregoing license shall be without the right to transfer or grant sublicenses to any Third Party (except to</p>

	<p>contractors performing work solely for the benefit of Company or the Company's Affiliates and under obligations of confidentiality and non-use similar to those of this Agreement), unless Company receives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AMC to do so.</p> <p>9.가.3 Company grants to AMC and AMC's Affiliates a non-exclusive, world-wide, royalty-free, fully-paid license (without the right to transfer or grant sublicenses) during the Term under Company's rights in Materials provided by Company to AMC under the Program to use such Materials under the Program. This license includes the right to sublicense only to contractors doing work for the benefit of AMC or AMC's Affiliates under the Program.</p> <p>9.가.4 AMC grants to Company and the Company's Affiliates a non-exclusive, world-wide, royalty-free, fully-paid license (without the right to transfer or grant sublicenses) during the Term under AMC's rights in Materials provided by AMC to Company under the Program to use such Materials under the Program. This license includes the right to sublicense only to contractors doing work for the benefit of Company or the Company's Affiliates under the Program.</p>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선스는 내부연구 개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타사로 전송하거나 재실시권을 부여할 권한을 제외함 • 라이선스의 활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한함으로써 발명의 성과가 공동연구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회사가 승인해야 하는 라이선스의 범위와 이러한 라이선스는 본 프로그램에 따라 AMC 또는 AMC 제휴사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업체에 한하여 서브 라이선스권한을 포함 • AMC가 승인해야 하는 라이선스의 범위와 이러한 라이선스는 본 프로그램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 제휴사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업체에 한하여 서브 라이선스권한을 포함

다) 상업적 라이선스

구 분	내 용
<p>계약서 조항(원문)</p>	<p>9.2 Commercial Option and Licenses.</p> <p>9.2.2 Consideration terms for any license elected pursuant to the Option will consider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the invention or IND application relative to the previous investments made by Company in developing the Material, and in the subsequent investments required to develop a marketed product. Terms shall specifically include, but will not be limited to, provisions that:</p> <p>9.2.2.1 for exclusive licenses, provide for a royalty of up to ___% on net sales of each Product whose manufacture, use or sale is covered by or requires the practice of any AMC Technical Development, AMC Invention or Joint Invention; and</p> <p>9.2.2.2 for non-exclusive licenses, provide for a royalty of up to ___% of net sales of each Product whose manufacture, use or sale is covered by or requires the practice of any AMC Technical Development or AMC Invention; and</p> <p>9.2.3 (.....생략.....) If Company rescinds the exercise of its option, then (i) the option will immediately lapse and expire, and (ii) AMC will be free to license the subject AMC Technical Developments, AMC Inventions or AMC's interest in Joint Inventions (but not the rights to Company solely-owned intellectual property or Company Confidential Information) to any Third Party(ies) parties as AMC desires, provided these terms are not more favorable than those offered to Company.</p> <p>9.2.4 For the avoidance of doubt, if for any reason Company does not obtain an exclusive license to any AMC Invention or AMC Technical Developments of the Option, AMC may license its interests in such AMC Invention or AMC Technical Developments to any Third Party on any terms it desires, in its sole discretion, provided that if licensed exclusively the terms are not more favorable than those offered to Company. Such licenses shall not include rights to Company solely-owned intellectual property or Company Confidential Information.</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실시권에 대해서 AMC기술개발, AMC발명 또는 공동발명으로 서 AMC 기술의 실시를 요하거나 실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용 또는 판매를 통한 각 제품의 순이익의 _%까지 로열티 지급 • 비전용실시권에 대하여 AMC기술개발 또는 AMC발명의 실시를 요 하거나 실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용 또는 판매를 통한 각 제품의 순이익 _%까지 로열티를 지급 • 회사가 옵션의 실행에 대해 무효로 하는 경우, 옵션은 권리소멸과 파기되며 AMC는 (회사가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지적재산권이나 회 사기밀정보를 제외하고) 공동발명에 대하여도 회사에 제공한 것보 다 유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제3자 등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옵션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여 AMC의 라이선스권 활용을 가능하게 해놓았으며, 다만 라이선스를 하는 경우에도 회사보다 제3 자에게 유리하게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침해를 방지
-----------	---

라) 출판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1가. Publication</p> <p>1가.1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inadvertent publication of the results arising under any Project Plan may jeopardize patent protection.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Company acknowledges the importance of publications to the reputation of AMC and its faculty members.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11 are intended to promote and ensure timely publication of results of Projects, inventions and Technical Developments, while protecting patent rights and Confidential Information.</p> <p>1가.2 In the event AMC wants to publish or present any or all of the Technical Developments, it shall submit to the Program Advisory Committee the manuscript, abstract or other proposed publication at least thirty (30) days prior to submission and, in the case of poster boards or other presentations, at least forty-five (45) days prior to the presentation itself (the "Initial Review Period"). The</p>

	<p>Company Contact to the Program Advisory Committee shall secure timely COMPANY review of the proposed publication. Company may, together with AMC, revise the manuscript or other proposed publication to ensure protection of the Company's Confidential Information. Upon Company's request, AMC shall delay submission or publication for up to an additional thirty (30) days (the "Supplemental Review Period") if Company deems it reasonably necessary to enable AMC or Company (as the case may be) to apply for Patent protection covering any Technical Development disclosed in the proposed publication. In exercising its rights under this Section, Company will not unreasonably withhold or delay consent.</p>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연구 성과에 대하여 출판을 하게 되는 경우 그 내용이 영업비밀 등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을 두어 성과물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서 연구의 성과물중 민감한 부분이 공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공개가능한 성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가. 계약서 일반사항

계약서명		COLLABORATION AGREEMENT
계약 주체	주체 유형	기업 VS. 기업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ularik, INC. • Knoll AG
계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공동개발 • 비용부담: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며, 연구 결과물의 특허등록 비용에 대한 규정만 존재함 • 소유: 합성발명품에 대해서는 공동의 소유 • 활용: 협약 상대방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독점권의 부여 규정

나. 계약서 분석(비용·소유·활용)

1) 비 용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8.2 Patent Management.</p> <p>8.2.1 Filing Party. Tularik Patents and Knoll Patents shall be prosecuted and maintained by Tularik and Knoll, respectively, at such Party's option and its own expense.</p> <p>8.4 Patent Costs. All fees and expenses paid to outside legal counsel and other Third Parties in connection with Applications or resulting patents ("Patent Costs") covering Inventions owned solely by a Party that are included in the Program Patents shall be borne solely by the Inventing Party unless and until the other Party becomes the Filing Party therefor. All Patent Costs for the</p>

	<p>Patents covering Joint Inventions shall be borne equally by the Parties, regardless of which Party is the Filing Party therefor. The Party developing a Research Compound shall pay the Patent Costs for Research Compound Patents relating to such Research Compounds commencing as of the date the developing Party notifies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Section 4.3.2.</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의 출원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각자 부담 원칙 • 공동발명의 특허에 관한 모든 비용은 참여자가 동등하게 부담하며, 공동개발의 참여자는 합성연구물에 대한 특허 비용을 부담

나) 소유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4.3.1 Ownership of Research Compounds. Subject to this Section</p> <p>4.3, all Research Compounds and all Inventions relating to the composition or use of Research Compounds ("Research Compound Inventions"), whether made solely by a Party or jointly by both Parties, shall be jointly owned by the Parties without regard to whether such Research Compound resulted from the optimization of a Knoll Substance or Tularik Substance. Each Party agrees to execute, or have its employees, agents or consultants execute, all paperwork necessary to effectuate any such assignment necessary to achieve such joint ownership of Research Compounds and Research Compound Inventions. Research Compound Patents shall be jointly owned by the Parties and shall be prosecut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8.2 hereof. The RC shall establish a common numbering system for the Research Compounds to allow the Parties to coordinate their activities with respect to such Research Compounds. Knoll expressly acknowledges that Tularik may, as joint owner of Research Compound Inventions, grant to JT a license under such Research Compound Inventions to make, have made, use, sell, have sold, import and have</p>

	<p>imported Research Compounds and Program Products in the Tularik Territory; provided, however, that the foregoing right to grant a license to JT shall not apply unless: (i) JT shall have made a reciprocal grant to Tularik of a right to sublicense to Knoll comparable intellectual property or other proprietary rights arising under the research program between Tularik and JT pursuant to the JT Agreement; and (ii) Tularik shall have, in turn, sublicensed such JT intellectual property or proprietary rights to Knoll.</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발명품에 대하여 발명의 당사자(일방 혹은 양 당사자)가 제공하는 물질에 의한 결과의 최적화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의 소유 • KNOLL은 합성발명품의 공동소유자로서 JT사에 대하여 합성발명품에 관한 라이선스를 승인. 다만 라이선스를 받을 경우에도 JT가 취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 • 공동개발결과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합성발명에 대해 공동의 소유를 규정해 놓음으로써 공동개발연구에 대한 유인설계를 통해 연구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ARTICLE 8 Ownership; Patents</p> <p>8.1 Ownership. Knoll shall have no rights in or to the Tularik Technology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in this Agreement or any other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ularik shall have no rights in or to the Knoll Technology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in this Agreement or any other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4.3.1, each Party shall solely own all discoveries, information, technology or inventions made or created solely by its employees, agents or consultants during the course of such Party's performance under the Collaboration Program and a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ed thereto. The Parties shall jointly own all discoveries, information, technology or inventions made or created jointly by employees, agents or consultants of both Parties during the course of their performance under the</p>

	Collaboration Program and a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ed thereto, without regard, in the case of Validated Hits and Program Products, to whether a Knoll Substance or Tularik Substance was selected as a Validated Hit upon which Program Products may be based.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으로 발명한 합성발명품을(규정 4.3.1) 제외하고는 각 참여자는 협력 프로그램하에서 진행된 성과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고 공동으로 진행 한 때 성과물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짐 • 본 계약 외에 다른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특히 관련 소유권 분쟁 위험을 차단

3) 활 용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2.9 Research License.</p> <p>2.9.1 Grant of Rights.</p> <p>Each Party hereby grants to the other Party a non-exclusive license, without the right to sublicense (except to Affiliates of Knoll that enter into the agreement with Tularik attached as Exhibit 2.9.1 or as provided in the following sentence), under its interest in the Program Technology, Knoll Technology or Tularik Technology, respectively, to the extent applicable to the Field,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the Collaboration Program. Knoll agrees that Tularik may sublicense to JT such non-exclusive licenses for use in the research program between Tularik and JT during the term of the JT Agreement; provided, however, that the foregoing right to the Sublicense to JT shall not apply unless: (i) JT shall have made a reciprocal grant to Tularik of a right to sublicense to Knoll comparable intellectual property or other proprietary rights arising under the research program between Tularik and JT pursuant to the JT Agreement; and (ii) Tularik shall have, in turn, sublicensed such JT intellectual property or proprietary rights to Knoll.</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OLL의 협력사를 제외하고는 서브 라이선스권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OLL의 경우에는 TULARIK사가 JT에 비독점적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경우라도 JT가 취해야할 사항을 규정 • 서브라이선스권을 공동의 조사 목적에 한정하여 부여함으로써 협업을 통한 성과를 창출하는 목적에 집중 • 또한 상대방이 서브라이선스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야 할 행동을 규정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2.9 Research License</p> <p>2.9.2 Limited Use. Each Party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use of the Library Compounds provided pursuant to Sections 4.1 and 4.2 is limited solely to those activities contemplated by the Collaboration Program,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and that such Library Compounds are for research use only and shall not be administered to humans in any manner or form, except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subject to receipt of appropriate governmental approvals for such use.</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들은 다른 합성물구조는 공동 프로그램의 활동범위에만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사용을 위하여 정부의 승인이 필요함을 규정 • 공동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투입물의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함 또한, 필요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을 최소화 하며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4.3.5 Cross-License to [*].</p> <p>(a) Promptly following receipt by Tularik of a notice from Knoll pursuant to Section 4.3.2(a), Tularik shall grant to Knoll a sole and exclusive, worldwide, royalty-bearing (in accordance with</p>

	<p>Section 4.4) license, with the right to sublicense [*], under the Tularik Patents and under Tularik's interest in any Patents to develop, make, have made, use, offer to sell, sell or import [*], subject to the terms of Section 4.3. Any such license granted with respect to [*] granted to Knoll pursuant to this Section 4.3.5(a) shall be in the form of the License Agreement, subject to Section 4.4. The license granted pursuant to this Section 4.3.5(a) shall survive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p> <p>(b) Promptly following receipt by Knoll of a notice from Tularik pursuant to Section 4.3.2(a), Knoll shall grant to Tularik a sole and exclusive worldwide, royalty-bearing (in accordance with Section 4.4.1) license, with the right to sublicense, under the Knoll Patents and under Knoll's interest in any Patents to develop, make, have made, use, offer to sell, sell or import [*], subject to the terms of Section 4.3. The license granted pursuant to this Section 4.3.5(b) shall be in the form of the Tularik License Agreement, subject to Section 4.4. The license granted pursuant to this Section 4.3.5(b) shall survive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p> <p>(c) Promptly following receipt by the non-Developing Party of a notice from the Developing Party pursuant to Section 4.3.2(a), the non- Developing Party shall grant to the Developing Party a sole and exclusive worldwide, royalty-free license, with the right to sublicense, under the non-Developing Party's Patents and under the non-Developing Party's interest in any Patents to develop, make, have made, use, offer to sell, sell or import [*], subject to the terms of Section 4.3. The license granted pursuant to this Section 4.3.5(c) shall be in the form (excluding financial terms) of the License Agreement or the Tularik License Agreement, as the case may be. The license granted pursuant to this Section 4.3.5(c) shall survive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p>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상대방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독점권의 부여를 통해 특허를 공유 • 특허공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둠으로써 연구과정에서 필요한 특허에 대한 개방성을 높여 특허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예방하여 공동 연구에의 효율성을 담보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서 조항(원문)</p>	<p>ARTICLE 9 Publication; Publicity</p> <p>9.1 Publication.</p> <p>Each Party recognizes that the publication of papers, including oral presentations and abstracts, regarding the Program Technology or Research Compounds, subject to reasonable controls to protect Confidential Information, will be beneficial to both Parties.</p> <p>Accordingly, each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review and approve any paper proposed for publication by the other Party, including oral presentations and abstracts, that utilizes data generated from the Research Program and/or includes Program Know-How, information relating to Research Compounds or Research Compound Inventions or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Before any such paper is presented or submitted for publication, the Party proposing to make a publication shall deliver a complete copy thereof to the other Party at least [*] prior to presenting the paper to any Third Party publisher. The Party receiving such proposed publication shall review any such paper and provide comments thereon to the publishing Party within [*] of the delivery of such paper to the receiving Party. With respect to oral presentation materials and abstracts, the Parties shall make reasonable efforts to expedite review of such materials and abstracts, and shall return such items as soon as practicable to the publishing Party with appropriate comments, if any, but in no event later than [*] from the date upon which such materials are received by the receiving Party. The publishing Party shall comply with the other Party's request to delete references to such other Party's Confidential Information in any such paper and agrees to withhold publication of same for up to an additional [*] in order to permit the Parties to obtain patent protection on any patentable inventions disclosed therein, if either of the Parties deems it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In addition, [*].</p>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전 각 참여자는 출판과 관련하여 사전검토 및 승인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또한 출판의 내용이 기밀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음 • 출판과 관련하여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필요한 기간에 관하여는 공동 연구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

가. 계약서 일반사항

계약서명		COLLABORATION AGREEMENT RIGEL PHARMACEUTICALS, INC and JANSSEN PHARMACEUTICA N.V
계약 주체	주체 유형	기업 VS. 기업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GEL PHARMACEUTICALS, INC • JANSSEN PHARMACEUTICA N.V
계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공동개발 • 비용부담: 안센측에서 연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명시함 • 소유: 양 회사 직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개발된 성과에 관하여는 미국 발명자 규칙에 의하여 공동의 소유로 함 • 활용: 규정 없음

나. 계약서 분석(비용·소유·활용)

1) 비 용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6. FINANCIAL SUPPORT</p> <p>6.1 SIGNING PAYMENT. Within ten (10) days of the Effective Date of this Agreement, Janssen will pay Rigel One Million US Dollars (US\$1,000,000).</p> <p>6.2 RESEARCH SUPPORT. Janssen will provide funding to support Rigel's efforts under the Research Program and 10 FTE'S of Rigel at a rate of US\$2,500,000 per year. Such amount shall be paid quarterly in advance.</p> <p>6.14 TAXES. All payments under this Agreement will be made without any deduction or withholding for or on account of any tax unless such deduction or withholding on behalf of Rigel is required by any applicable law. If Janssen is so</p>

	<p>required to deduct or withhold, Janssen will:</p> <p>(a) promptly notify Rigel of such requirement;</p> <p>(b) pay to the relevant authorities the full amount required to be deducted or withheld promptly upon the earlier of determining that such deduction or withholding is required or receiving notice that such amount has been assessed against Rigel;</p> <p>(c) promptly forward to Rigel an official receipt (or certified copy), or other documentation reasonably acceptable to Rigel, evidencing such payment to such authorities.</p> <p>6.15 THIRD PARTY PAYMENTS BY RIGEL.</p> <p>All payments due to Third Parties pursuant to agreement between Rigel and a Third Party that relate to Rigel Technology shall be made by and or the account of Rigel. Janssen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any payment due to Stanford University,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BASF, any other Third Party pursuant to an agreement between Rigel and such Third Party.</p>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센측에서 연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명시 • 일방 당사자가 공동연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기도 하나 본 계약에서는 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협약에 의한 모든 자금의 지급은 공제나 원천징수의 대상에 해당함이 없이 이루어져야 명시하고 있으며, 안센측에서 공제나 원천징수가 필요하다면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하여 규정 • 제3자와 관련된 지출에 관하여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지출에 관한 범위를 명확히 함. 비용을 부담하는 제3자의 대상을 확정 후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 없음을 규정하여 자금 공급 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비용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

2) 소 유

구 분	내 용
<p>계약서 조항(원문)</p>	<p>7. Intellectual Property</p> <p>7.3 OWNERSHIP OF RESEARCH PROGRAM KNOW-HOW; INVENTIONS.</p> <p>Except as otherwise set forth herein, Research Program Know-How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patentable invention or discovery) acquired, developed or made solely by employees of one Party during the course of the Research Program ("Sole Inventions") shall be the property of such Party. Research Program Know-How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patentable invention or discovery) acquired, developed or made jointly by employees of Janssen and Rigel a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United States rules of inventorship, shall be owned jointly by Janssen and Rigel, each to own an undivided one-half (1/2) interest in such Research Program Know-How ("Joint Invention") except as provided and subject to the licenses granted herein. Each Party shall cooperate with the other in completing any patent applications relating to Joint Inventions, and in executing and delivering any instrument required to assign, convey or transfer to such other Party its undivided one-half (1/2) interest.</p> <p>7.4 PATENT PROSECUTION.</p> <p>Each Party will prepare, file, prosecute and maintain patent applications for its Sole Inventions and shall be responsible for related interference proceedings. The Parties will endeavor to ensure that such patent applications are filed before any public disclosure by either Party to maintain the validity of patent applications to be fil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9. Janssen shall be responsible for filing and prosecuting applications for, and maintaining, Joint Inventions not related to Rigel Technology, using counsel of its choice, throughout the world. Janssen shall pay all expenses for filing applications for, and maintenance of, such Joint Inventions. In the event that a</p>

	<p>Party decides not to proceed with filing or prosecuting an application for, or maintaining, a Research Program Patent for which it is responsible under this Section 7.3, it shall give the other Party ninety (90) days written notice before any public disclosure or any relevant prosecution or maintenance deadline and transmit all information reasonable and appropriate relating to such Research Program Patent, and such o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pursue, at its own expense, prosecution of such application for, or maintenance of, such patent.</p>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프로그램 하에서 개별 당사자 측의 독자적으로 개발된 성과에 대하여는 각자의 소유권이 됨 • 양 회사 직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개발된 성과에 관하여는 미국 발명자 규칙에 의하여 공동의 소유로 함 • 각 당사자는 공동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구 사항들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함 • 개별기업의 특허 출원 및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은 각자 부담 • 안센은 리겔 테크놀러지와 관련되지 않은 공동발명에 대한 세계 각지의 출원등록,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또한 안센은 이러한 공동발명에 대하여 출원 등록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을 부담

3) 활 용

가) 기술료 지불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서 조항(원문)</p>	<p>6. FINANCIAL SUPPORT</p> <p>6.3 PAYMENTS FOR PHARMACEUTICAL COLLABORATION PRODUCTS.</p>

(a) MILESTONE PAYMENTS. For Pharmaceutical Collaboration Products, the following payments will be due to Rigel upon the occurrence of the following events:

	MILESTONE EVENT	AMOUNT OF PAYMENT
1)	First to occur of either (a) Janssen initiating compound screening with the second Validated Target–Peptide Pair delivered by Rigel or (b) six (6) months after Rigel delivers the second Validated Target–Peptide Pair.	\$500,000
2)	Demonstration by Janssen of IN VIVO efficacy in at least one animal model of the first Pharmaceutical Collaboration Product identified in a screening assay using a Janssen Collaboration Target.	\$500,000
3)	Selection by Janssen of the first Development Candidate.	\$1million
4)	Enrollment of the fifth patient in a Phase III Clinical Trial for the first Pharmaceutical Collaboration Product	\$2million
5)	Approval of the first NDA for each Pharmaceutical Collaboration Product in the first Major Market.	\$5million

(b) ROYALTIES. Janssen shall pay Rigel royalties on Net Sales of Pharmaceutical Collaboration Products at a rate of four percent (4%) when the Pharmaceutical Collaboration Product contains a compound originating from Janssen's compound collection and six percent (6%) when the Pharmaceutical Collaboration Product contains a compound originating from Rigel's compound collection.

분석

- 기술료 지급과 관련하여, 제약협력제품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기준을 정함
- 분배와 관련된 규정으로 공동발명 제품에 대한 기술료 지급 기준 명시
- 안센은 제약협력제품의 순판매에 대하여 안센의 합성제조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4%의 비율로 로열티를 지불하며, 리겔사의 합성제조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6%의 비율로 로열티를 지불

나) 출 판

구 분	내 용
<p>계약서 조항(원문)</p>	<p>9.3 PUBLICATIONS.</p> <p>(a) REVIEW AND APPROVAL. Each Party to this Agreement recognizes that the publication of papers, including oral presentations and abstracts, regarding the Research Program Know-How and the Research Program Patents, subject to reasonable controls to protect Confidential Information, will be beneficial to both Parties. However, each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review and approve any paper proposed for publication by the other Party or its permitted sublicensees, including oral presentations and abstracts, which utilizes data generated from the Research Program and/or includes Research Program Know-How or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reviewing Party.</p> <p>(b) REVIEW AND APPROVAL PROCESS. At least thirty (30) days before any such paper is presented or submitted for publication, the Party or its permitted sublicensee proposing publication shall deliver a complete copy to the other Party. The receiving Party shall review any such paper and give its comments to the publishing Party or its permitted sublicensee within thirty (30) days of the delivery of such paper to the receiving Party. With respect to oral presentation materials and abstracts, the Parties shall make reasonable efforts to expedite review of such materials and abstracts, and shall return such items as soon as practicable to the publishing Party with appropriate comments, if any, but in no event later than thirty (30) days from the delivery date thereof to the receiving Party. The publishing Party or its permitted sublicensee shall comply with the other Party's request to delete references to such other Party's Confidential Information in any such paper and agrees to withhold publication of same an additional ninety (90) days in order to permit the Parties to file patent application, if either of the Parties deem it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p>
<p>분석</p>	<p>• 쌍방에 이익이 될 경우 출판이 가능하며, 양 당사자 모두 사전 검토 승인 권한을 보유</p>

사례 18.	PROTOCOL
	The Department of Energy of the United States (USDO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NEA)

가. 계약서 일반사항

계약서명		PROTOCOL
계약 주체	주체 유형	정부기관 vs. 정부기관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Department of Energy of the United States (USDOE) •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NEA)
계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공동개발 • 비용부담: 기관 각자 부담 • 소유: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은 발명자가 소유(단, 협의로 달라질 수 있음) • 활용: 규정 없음

나. 계약서 분석(비용·소유·활용)

1) 비 용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VI. Funding Mechanism</p> <p>가.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funds authorized and made available by each Party's government and subject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funding for the activities under this Protocol shall be borne by the Parties, to help ensure the long-term and stable financial support to move the objectives of the Center forward. Private industry and academia also may provide funding for joint projects and activities in which they are participating.</p>

	<p>2. USDOE shall fund only research performed by United States participants, and MOST and NEA shall fund only research performed by Chinese participants, in collaborative activities, unless agreed otherwise by the Parties for specific projects.</p> <p>3. Each Party shall conduct the activities under this Protocol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to which it is subject.</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협약에 따른 연구자금은 각 기관이 부담 • 기업이나 학교는 참여를 원할 경우 자금 지원을 통해 참여 가능 • 다른 협약이 없을 경우 USDOE는 미국 참가기관의 연구 재정만을 지원하고, MOST와 NEA는 중국 참가기관의 연구 재정만 지원

2) 소 유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II. ALLOCATION OF RIGHTS</p> <p>A. Each Party shall be entitled to a non-exclusive, irrevocable, royalty-free license in all countries to translate, reproduce, and publicly distribute scientific and technical journal articles, reports, and books directly arising from cooperation under this Protocol. All publicly distributed copies of a copyrighted work prepared under this provision shall indicate the names of the authors of the work in-ncss an author explicitly declines to be named.</p> <p>B. Rights to all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other than those rights described in Section II.A. above, shall be allocated as follows:</p> <p>가. Visiting researchers, for example, those not participating in a research project with a specific scope of work jointly funded by the Parties. shall receiv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wards, bonuses and royalties in accordance with the policies of the host institution.</p>

- 2.(a) Any intellectual property created by persons employed or sponsored by one Party under cooperative activities other than those covered by paragraph II.B.1. shall be owned by that Party. Intellectual property created by persons employed or sponsored by both Parties under cooperative activities (involving a research project with a specific scope of work jointly funded by the Parties) shall be jointly owned by the Parties. In addition, each creator shall be entitled to awards, bonuses and royalties in accordance with the policies of the institution employing or sponsoring that person.
- (b) Unless otherwise agreed in a Project Annex, each Party shall have within its territory a right to exploit or allow others to exploit intellectual property created in the course of the cooperative activities.
- (c) The rights of a Party outside its territory shall be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as described in paragraph II.B.2(d).
- (d) The Parties or their participants shall jointly develop provisions of a Technology Management Plan regarding the exploit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described in paragraph II.B.2.(b) and (c) and other than those covered by paragraph II.B.(l) of this Annex. The Technology Management Plan shall consider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the Parties to the particular jointly-funded research project, the benefits of licensing by territory, or for fields of use, and other factors deemed appropriate for the particular technology which is the subject matter of the jointly-funded research project.
- (e) If the Parties cannot reach an agreement on a joint Technology Management Plan in the particular research project agreement, work on the particular research project shall not commence.
- (f) Notwithstanding paragraphs II.B.2. (a-e) above, if a particular project has led to the cre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ed by the laws of one Party but not the other, unless other allocation agreements are agreed upon by both Parties, the Party whose laws

	<p>provide for this type of protection shall be entitled to all rights to exploit or license such intellectual property worldwide, although creators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nonetheless be entitled to awards, bonuses and royalties as provided in paragraph II.B.2.(a).</p> <p>(g) For each invention made under any cooperative activity, the Party employing or sponsoring the inventor(s) shall disclose the inventions promptly to the other Party, together with any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necessary to enable the other Party to establish any rights to which it may be entitled. Either Party may ask the other Party in writing to delay publication or public disclosure of such documentation or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its rights in the invention. Unles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the delay shall not exceed a period of six months from the date of disclosure by the inventing Party to the other Party.</p>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연구가 없는 객원연구자나 당사자 일방에 고용된 자가 발명한 지식재산은 해당 당사자가 소유 • 공동의 지원을 받은 연구자의 지식재산은 각 당사자의 공동소유 • 공동연구 당사자와 참가자는 합의를 통해 공동 기술 관리 계획에 대한 조항을 만들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는 시작되지 않음 • 계약지역 외에서의 권리 귀속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상호간 합의 하여 결정함(II.B.2.(c)) • 프로젝트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이 당사자 일방의 준거법에 의해서만 보호되는 경우, 다른 분배협약이 없다면 그 당사자 일방이 전 세계적으로 이용과 라이선스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함 • 공동연구로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자를 고용하고 지원한 기관은, 공동연구의 상대방이 필요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서류와 정보를 즉시 제공할 의무 有

3) 활 용

구 분	내 용
<p>계약서 조항(원문)</p>	<p>III. BUSINESS-CONFIDENTIAL INFORMATION</p> <p>In the event that information identified in a timely fashion as business-confidential is furnished or created under this Protocol, each Party and its participants shall protect such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which may include execution of an appropriate agreement of confidentiality. Information may be identified as "business-confidential" if a person having the information may derive an economic benefit from it or may obtain a competitive advantage over those who do not have it, the information is not generally known or publicly available from other sources, and the owner has not previously made the information available without imposing in a timely manner an obligation to keep it confidential.</p>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을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연구내용을 보호

가. 계약서 일반사항

계약서명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CONSORTIUM AGREEMENT
계약 주체	주체 유형	대학연구기관 vs.협약 상대방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Board of Trustees of Western Michigan niversity(WMU) • Industrial Full Members
계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공동개발 • 비용부담: 제3자(산업별 모든 Member)가 매년 GMIC에 25,000달러의 재정지원을 함 • 소유: GMIC Member의 공동소유와 소유권 박탈에 대해 규정 • 활용: 비밀유지조항 외에 규정 없음

나. 계약서 분석(비용·소유·활용)

1) 비 용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Article V Cost Sharing</p> <p>5.1 Cost Sharing</p> <p>Each Industrial Full Member shall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the GMIC in the amount of \$25,000 per year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The first payment, based upon a mutually agreeable payment schedule, shall be due within 90 days of signing of the Agreement. Industrial Full Members shall equally share any additional funding, including the costs of the Projects as reflected by the budgets established in Schedule A, and any other general or administrative costs or expenses incurred by the GMIC related to the Projects. Such additional funding shall require a unanimous vote by the Advisory Committee. The Advisory Committee shall notify</p>

	Industrial Full Members of the funding requirements and shall establish the timing of payments, which shall be timely made upon receipt of notice from the Advisory Committee. Any Industrial Full Member failing to promptly make any payment of funding or personnel shall be subject to expulsion.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기간 동안 각 산업별 모든 Member는 매년 GMIC에 25,000 달러의 재정지원을 함 • 모든 기업회원들은 GMIC의 프로젝트 관련 비용으로 인해 필요한 추가 자금을 동등하게 부담

2) 소 유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Article VI Intellectual Property</p> <p>6.1 <u>GMIC Members' Rights</u>: Any invention created, conceived or developed as a result of work done in connection with a Project shall be owned jointly by those GMIC Members in the GMIC at the time such invention was created, conceived or developed, each of whom shall own an undivided interest in such invention(s). Each such GMIC Member shall have a perpetual, non-exclusive, non-assignable, royalty free right to use the invention under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ranted on the invention, unless the GMIC Advisory Committee decides to revoke such rights on a case-by-case basis when deemed by the Committee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GMIC. Each GMIC Member covenants that it will obtain from its applicable employee(s) an assignment of any rights in any patent application(s) filed hereunder.. Any GMIC Member that withdraws from the GMIC under Section 2.3 will have no ownership interest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ny inventions that are created, conceived, or developed by the GMIC after that GMIC Member has withdrawn from the GMIC. Any GMIC Member that is expelled from the GMIC agrees to forfeit its ownership rights and its license to use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the</p>

	expelled member jointly owned under this Agreement. The expelled member will transfer or assign any such rights to the then remaining GMIC Members as directed by the Advisory Committee.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협력을 통해 발명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발명이 완성된 시점부터 GMIC Member가 공동으로 소유함 • GMIC Member는 발명에 대해 종신의, 비독점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사용 권한을 갖는다 • Section 2.3에 의해 GMIC에서 탈퇴한 Member는 이 협약에 의한 공동소유권과 실시권을 박탈당하는데 동의함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MIC Member의 공동소유와 소유권 박탈에 대해 규정

3) 활 용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6.2 <u>Confidentiality</u> :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for five (5) years thereafter, the GMIC Members shall use reasonable efforts to prevent disclosure to others of Confidential Information, except as follows:</p> <p>(a) With the unanimous written consent of the GMIC Members;</p> <p>(b) To the extent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has become or hereafter becomes generally available to the public, other than as a result of a disclosure in violation of this Agreement or was known to the disclosing GMIC Member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r prior to its disclosure by a GMIC Member;</p> <p>(c) To the extent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was or becomes public information not due to any fault by the disclosing GMIC Member;</p> <p>(d) To the extent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must be disclosed due to governmental laws, regulations or</p>

requirements; or,

- (e) In compliance with law, a lawful subpoena or court order; provided, however, if a GMIC Member is requested or required (by oral questions, interrogatories, requests for information or documents in legal proceedings, subpoena, civil investigative demand or other similar process) to disclose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it shall seek such protective orders as may be reasonably available and provide the other GMIC Members with prompt written notice of any such request or requirement so that the GMIC or GMIC Member may also seek a protective order or other appropriate remedy and/or waive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Confidential Information" means all written information (i) provided by a GMIC Member, (ii) generated, created or discussed among GMIC Members related to any Project, or (iii) Information developed or discovered in the pursuit of the Purpose.

- 6.3 Scholarly Publication: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WMU shall have the right to publish Project results with proper masking of specific data. Any proposed publication must be submitted to the Advisory Committee for approval at the next scheduled meeting prior to submission or other disclosure of any portion thereof to any third party for presentation and/or publication. The Advisory Committee shall have thirty (30) days from such meeting date to object to such proposed publication and/or presentation because it discloses Confidential Information. If any of the Industrial Full Members make such objection, WMU shall refrain from making such publication or presentation (or other such disclosures) until WMU and the objecting party negotiate a mutually agreed upon version (i) within thirty (30) days from receipt of objection i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to be disclosed does not contain patentable subject matter, or (ii) within six (6) months from receipt of objection if patentable subject matter is proposed to be disclosed, so

	<p>that a patent application can be prepared and filed ; provided, however, that said six (6) month period shall be extended for such time as is necessary to complete said preparation and filing.</p>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이후 5년동안, GMIC Member는 비밀 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주의 • WMU는 특정 자료를 비공개로 하여 연구 결과를 출판(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연구를 통해 획득한 비밀 정보는 일정한 사유 없이 공개가 불가능 하지만 WMU의 학술적 목적을 위한 출판을 예외적으로 인정

가. 계약서 일반사항

계약서명		RESEARCH AGREEMENT
계약 주체	주체 유형	대학 vs. 스폰서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 Sponsor which is located outside the usa
계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대학 • 비용부담: 스폰서 • 소유: 스폰서의 직원이 단독으로 고안하거나 처음으로 실행한 발명·저작권의 경우, MIT의 재정이나 시설 이용 비중이 크지 않은 경우에 스폰서가 소유권을 가짐 / MIT의 고용인·학생과 스폰서의 직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른 발명은 당사자의 공동소유로 함 • 활용: 대학과 스폰서 모두 독립적으로 라이선스 부여가 가능

나. 계약서 분석(비용·소유·활용)

1) 비 용

가) 비용 일반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4. REIMBURSEMENT OF COSTS</p> <p>In consideration of the foregoing, the Sponsor shall reimburse MIT for all direct and F&A (Facilities & Administrative or indirect) costs incurred in the performance of the Research, including business class fares for international travel of faculty and staff. Total reimbursements shall not exceed the total estimated project cost of \$_____ without written authorization from the Sponsor.</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폰서가 연구에 따른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만 상한선을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게 함
----	--

나) 비용 공동부담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10. JOINT INTELLECTUAL PROPERTY.</p> <p>A. JOINT INVENTIONS. The Parties shall have joint title to (i) any invention conceived or first reduced to practice jointly by employees and/or students of MIT and the Sponsor’s personnel in the performance of the Research and (ii) any invention conceived or first reduced to practice by the Sponsor’s personnel in the performance of the Research with significant use of funds or facilities administered by MIT (each, a “Joint Invention”). The Sponsor shall be notified of any Joint Invention promptly after an invention disclosure is received by MIT’s Technology Licensing Office. MIT shall have the first right to file a patent application on a Joint Invention in the names of both Parties. <u>All expenses incurred in obtaining and maintaining any patent on such Joint Invention shall be equally shared except that, if one Party declines to share in such expenses, the other Party may take over the prosecution and maintenance thereof, at its own expense, provided that title to the patent remains in the names of both Parties.</u></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연구에 따른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함 단, 당사자 일방이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특허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다면 자신에게 해당되는 비용만 부담 • 비용의 원칙적 공동부담

2) 소 유

구 분	내 용
<p>계약서 조항(원문)</p>	<p>• 9. SPONSOR INTELLECTUAL PROPERTY. Title to any invention conceived or first reduced to practice in performance of the Research solely by the Sponsor’s personnel without significant use of MIT administered funds or facilities(“Sponsor Invention”) shall remain with the Sponsor. Title to and the copyright in any copyrightable material first produced or composed in the performance of the Research solely by the Sponsor’s personnel without significant use of MIT administered funds or facilities (“Sponsor Copyright”) shall remain with the Sponsor. Neither Sponsor Inventions nor Sponsor Copyrights shall b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p> <p>• 10. JOINT INTELLECTUAL PROPERTY.</p> <p>A. JOINT INVENTIONS. The Parties shall have joint title to (i) any invention conceived or first reduced to practice jointly by employees and/or students of MIT and the Sponsor’s personnel in the performance of the Research and (ii) any invention conceived or first reduced to practice by the Sponsor’s personnel in the performance of the Research with significant use of funds or facilities administered by MIT (each, a “Joint Invention”). The Sponsor shall be notified of any Joint Invention promptly after an invention disclosure is received by MIT’s Technology Licensing Office. MIT shall have the first right to file a patent application on a Joint Invention in the names of both Parties.</p> <p>C. JOINTLY DEVELOPED COPYRIGHTABLE MATERIALS. Copyrightable materials, including computer software, developed in the performance of the Research (i) jointly by employees and/or students of MIT and the Sponsor’s personnel, or (ii) by the Sponsor’s personnel with significant use of funds or facilities MIT SRA Intl Sponsors administered by MIT, shall be jointly owned by both Parties, who shall each have the independent, unrestricted right to dispose of such copyrightable materials and their share of the copyrights therein as they deem appropriate,</p>

	<p>without any obligation of accounting to the other Party.</p> <p>• 11. MIT INTELLECTUAL PROPERTY.</p> <p>A. MIT INVENTIONS. MIT shall have sole title to (i) any invention conceived or first reduced to practice solely by employees and/or students of MIT in the performance of the Research (each an “MIT Invention”) and (ii) any invention conceived or first reduced to practice by the Sponsor’s personnel with significant use of funds or facilities administered by MIT, if the invention is conceived or reduced to practice other than in the performance of the Research. The Sponsor shall be notified of any MIT Invention promptly after a disclosure is received by MIT’s Technology Licensing Office. MIT (a) may file a patent application at its own discretion or (b) shall do so at the request of the Sponsor and at the Sponsor’s expense.</p> <p>E. COPYRIGHT OWNERSHIP AND LICENSES. Title to and the copyright in any copyrightable material first produced or composed in the performance of the Research solely by employees and/or students of MIT shall remain with MIT.</p>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폰서의 직원이 단독으로 고안하거나 처음으로 실행한 발명·저작권은 MIT의 재정이나 시설 이용 비중이 크지 않은 경우에 스폰서가 소유권을 가짐 • MIT의 고용인·학생과 스폰서의 직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른 발명은 당사자의 공동소유로 함 • 스폰서의 직원이 MIT의 재정이나 시설을 상당부분 이용하여 단독으로 고안하거나 처음으로 실행한 발명·저작권은 공동소유로 함 •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료들은 (i)MIT와 스폰서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로 인한 것이거나, (ii)스폰서의 직원이 MIT의 재정이나 시설을 상당부분 이용하여 단독으로 고안하거나 처음으로 실행한 것인 경우 당사자의 공동소유 • (i)MIT의 고용인이나 학생이 고안 혹은 처음으로 실행한 발명이거나 (ii)MIT의 재정과 시설을 상당부분 이용하여 스폰서의 직원이 고안하거나 처음으로 실행한 발명은 MIT의 단독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T의 고용인이나 직원이 단독으로 연구하여 생산하거나 합성한 저작권 취득 가능 자료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MIT에 있음 • 단독으로 수행한 연구에 대해서는 단독 소유를 인정함 다만 MIT의 재정과 시설의 도움을 받은 정도에 따라 공동소유 여부가 결정됨
--	---

3) 활 용

가) 라이선스 부여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10. JOINT INTELLECTUAL PROPERTY.</p> <p>B. LICENSES. Each Party shall have the independent, unrestricted right to license to third parties any such Joint Invention without accounting to the other Party, except that the Sponsor shall be entitled to request an exclusive license to MIT's interest in a Joint Invention as provided under paragraph 11.B.2. below.</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독립적이고 제한 없는 권리를 가짐 • 대학과 스폰서 모두 독립적으로 라이선스 부여가 가능

나) 라이선스 옵션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11. MIT INTELLECTUAL PROPERTY.</p> <p>B. LICENSING OPTIONS. For each MIT Invention on which a patent application is filed by MIT, MIT hereby grants the Sponsor a non-exclusive, non-transferable, royalty-free license for internal research purposes. The Sponsor shall further be entitled to elect one of the following alternatives by notice in writing to MIT within six (6) months after MIT's notification to the Sponsor that a patent application has been filed:</p>

	<p>1. a non-exclusive, non-transferable, world-wide, royalty-free license (in a designated field of use, where appropriate) to the Sponsor, without the right to sublicense, in the United States and/or any foreign country elected by the Sponsor pursuant to Section 11.C. below, to make, have made, use, lease, sell and import products embodying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such invention, provided that the Sponsor agrees to demonstrate reasonable efforts to commercialize the technology in the public interest and reimburse MIT for the costs of patent prosecution and maintenance in the United States and any elected foreign country; or</p> <p>2. a royalty-bearing, limited-term, exclusive license (subject to third party rights, if any, and in a designated field of use, where appropriate) to the Sponsor, including the right to sublicense, in the United States and/or any foreign country elected by the Sponsor pursuant to Section 11.C. below, to make, have made, use, lease, sell and import products embodying or produced through the use of such invention. This option to elect an exclusive license is subject to MIT's concurrence and the negotiation of commercially reasonable license terms and conditions and conditioned upon Sponsor's agreement to reimburse MIT for the costs of patent prosecution and maintenance in the United States and any elected foreign country and to cause any products produced pursuant to this license that will be used or sold in the United States to be substantially manufactured in the United States.</p>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의 MIT의 발명은 MIT가 출원함. MIT는 내부 연구 목적에 한하여 스폰서에게 비독점적이고 비양도성의 무상실시권을 부여함 스폰서는 MIT로부터 특허출원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가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독점적, 비양도성, 세계적, 무상실시권. 미국과, 스폰서가 지정한 외국에서의 재실시권은 제외됨 2. 유상의, 기한 있는, 독점적 실시권. 미국과, 스폰서가 지정한 외국에서의 재실시권을 포함함 • 스폰서는 제3자에 비해 더 먼저 특허실시권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독점적 실시나 재실시를 원할 경우, 비용과 기한의 제약이 따름

다) 출판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8. PUBLICATIONS. MIT will be free to publish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fter providing the Sponsor with a thirty (30) day period in which to review each publication to identify patentable subject matter and to identify any inadvertent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f necessary to permit the preparation and filing of U.S. patent applications, the Principal Investigator may agree to an additional review period not to exceed sixty (60) days. Any further extension will require subsequent agreement between the Sponsor and MIT.</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T는 스폰서에게 30일간 검토할 시간을 준 후 자유롭게 연구 결과를 공개 • 연구주체인 대학에 연구결과를 공개할 권리를 부여

라) 비밀유지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11. MIT INTELLECTUAL PROPERTY.</p> <p>D. CONFIDENTIALITY OF INVENTION DISCLOSURES. The Sponsor shall retain all invention disclosures submitted to the Sponsor by MIT in confidence and use its best efforts to prevent their disclosure to third parties. The Sponsor shall be relieved of this obligation only when this information becomes publicly available through no fault of the Sponsor.</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폰서는 MIT에게서 제공된 발명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 스폰서의 비밀유지의무 규정

가. 계약서 일반사항

계약서명		International Sponsored Research Agreement -Cost Reimbursement
계약 주체	주체 유형	대학 vs. 다른 국적을 갖는 제3자
	당사자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000
계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공동개발 • 비용부담: 제3의 기관(후원금이 고정되지 않고 과제 수행에 따른 실소요비용을 지급하는 유형) • 소유: 후원자와 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한 모든 발명과 발견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속하게 됨 • 활용: 대학은 자신의 연구 및 교육목적을 위한 대학의 발명 또는 발견을 만들고 사용하기 위한 로열티, 변경가능성이 없는 라이선스를 자체적으로 보유함. 그 외에 추가적인 합의 하에 결정됨

나. 계약서 분석(비용·소유·활용)

1) 비 용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3. COMPENSATION</p> <p>3.1 As consideration for the performance by University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Sponsor will pay the University an amount equal to its expenditures and reasonable overhead in conducting the Research Program subject to a maximum expenditure limitation of \$_____ U.S. Dollars. Payment in full in U.S. Dollars in the amount of \$_____ shall be wired to University within thirty (30) days following Sponsor’s execution of the Agreement and receipt of an invoice,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electronic payment information.</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폰서는 연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에게 지출한 비용의 총량에 대하여 동일한 규모의 상환과 더불어 간접비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지불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상한을 정하여야 함 • 실소요비용에 대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연구과정에서 주어진 예산을 공유재로 인식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	--

2) 소 유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7. PATENTS, COPYRIGHTS AND TECHNOLOGY RIGHTS</p> <p>7.1 Title to all inventions or discoveries made solely by University resulting from the research performed hereunder shall reside in University, title to all inventions or discoveries made solely by Sponsor shall reside in Sponsor, and title to all inventions and discoveries made jointly by Sponsor and University shall reside jointly in Sponsor and University.</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자와 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한 모든 발명과 발견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속하게 됨 • 일반적인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와 같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의 결과 도출되는 성과에 대하여는 공유함을 명시

3) 활 용

가) 라이선스 부여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7. PATENTS, COPYRIGHTS AND TECHNOLOGY RIGHTS</p> <p>7.1 _____ University reserves for itself a royalty-free, irrevocable license to make and use such University inventions or discoveries for its own research and educational purposes.</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은 자신의 연구 및 교육목적을 위한 대학의 발명 또는 발견을 만들고 사용하기 위한 로열티, 변경가능성이 없는 라이선스를 자체적으로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의 발명 또는 발견에 대하여는 라이선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나) 스폰서에 대한 라이선스 허가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7. PATENTS, COPYRIGHTS AND TECHNOLOGY RIGHTS</p> <p>7.1_____ In the event that Sponsor and University fail to enter into an agreement during that period of time, then the rights to such inventions or discoveries shall be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University policies, with no obligation to Sponsor. Sponsor agrees to pay a reasonable royalty for the use of the invention or discovery to be negotiated in good faith._____</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자와 대학이 일정 기간내에 협약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후원자의 부담없이 대학의 규정에 따라 발명 또는 발견에 관한 권리가 처리됨 • 후원자는 성실하게 협의된 결과로서 발명 또는 발견에 대한 사용의 대가로서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동의함 • OTC에 의하여 처리되어지는 연구의 성과에 대하여 후원자가 사용하기로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대학측에 제공해야 함 • 다만, 사용하기로 하는 성과가 공동의 연구결과로 도출된 성과에 대하여 여도 후원자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더 명확한 구분이 필요

다) 지식재산의 보호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7. PATENTS, COPYRIGHTS AND TECHNOLOGY RIGHTS</p> <p>7.1_____ If such invention or discovery is made resulting from the research, the Principal Investigator shall submit an invention disclosure (http://www.otc.utexas.edu/InventorForms.jsp) to University's Offic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OTC"). The OTC will then forward the invention disclosure to Sponsor. Sponsor</p>

	<p>shall then have thirty (30) days from receipt of such disclosure of any invention or discovery to notify University of its desire to enter into such a license agreement, and a license agreement shall be negotiated in good faith within a period not to exceed sixty (60) days from Sponsor's notification to University of its desire to enter into a license agreement, or such period of time as the parties shall mutually agree in writing. In the event that Sponsor and University fail to enter into an agreement during that period of time, then the rights to such inventions or discoveries shall be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University policies, with no obligation to Sponsor. Sponsor agrees to pay a reasonable royalty for the use of the invention or discovery to be negotiated in good faith. Until any such invention or discovery has been presented as set forth above, University shall not offer rights to that invention or discovery to any third party.</p>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성과로 도출된 발명에 대하여 OTC에게 발명의 공개에 관하여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후원자에게도 전해져 일정기간을 거쳐 실시권에 관한 합의를 도출 • 상술한바와 같이 발명 또는 발견이 제시되어질 때까지는 대학은 제3자에 대하여 발명 또는 발견과 관련한 권리를 제공해서는 안됨 • 당해 계약서의 경우 발명에 대하여 OTC를 통하여 발명이 스폰서에게 공개되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OTC에게 발명의 사실을 통지하여 발명 사실에 대한 실시협약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 하고자 노력

라) 출 판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서 조항(원문)</p>	<p>6. PUBLICATION AND ACADEMIC RIGHTS</p> <p>6.1 University and the Principal Investigator have the right to publish or otherwise publicly disclose information gained in the course of this Agreement, except for Sponsor's confidential information ("Confidential Information") as may</p>

	<p>be furnished to University pursuant to a separate nondisclosure agreement executed by the parties. In order to avoid loss of patent rights as a result of premature public disclosure of patentable information, University will submit any prepublication materials to Sponsor for review and comment twenty (20) days in advance of its planned submission for publication. Sponsor shall notify University within ten (10) days of receipt of such materials whether it desires University to file patent applications on any inventions contained in the materials; and, if University agrees to do so, University will proceed to file the patent application(s) in due course. University shall have final authority to determine the scope and content of any publications.</p>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과 주요 연구자들은 당사자간의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에 따라 대학에 제공될 수 있는 정보 등과 후원자의 기밀정보를 제외하고 연구의 성과에 대해 출판의 권리를 보유함 • 특허출원이 가능한 정보의 출판으로 인한 특허권 상실을 피하기 위하여 대학은 후원자에게 사전에 출판물을 제출하며, 후원자는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에 후원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침해의 소지를 예방하도록 함

가. 계약서 일반사항

계약서명		Agreement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계약 주체	주체 유형	정부 vs. 정부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vernment of Canada •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계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공동개발 • 비용부담: 공동연구와 직접 관련된 비용 규정은 부재함 • 소유: 협력활동 하에 당사국들에 의한 공동발명 성과물의 지적재산권에 관하여는 참여정도에 따라 결정됨 • 활용: 협약의 당사자들은 협력활동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의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만을 명시함. 연구성과물 활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나. 계약서 분석(비용·소유·활용)

1) 비 용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Article 6 - Coordination and Facilitation of Cooperative Activities</p> <p>5. The costs incurred by members of the Joint Committee in the exercise of their functions shall be borne by the Party who has designated them. The costs, other than those for travel and accommodation, which are directly associated with meetings of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borne by the host Party.</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협력활동위원회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의해 발생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한 여행, 숙박 비용 등에 대하여는 주최하는 측에서 부담 • 국제공동연구를 직접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외에도 협력활동을 조정 하고 촉진하기 위한 간접비용에 대한 규정을 두어 공동연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반면, 간접비용을 포함시키는 경우 비용의 활용과 그에 따른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함
-----------	---

2) 소 유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Article 11 - Intellectual Property</p> <p>2. All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ed exclusively by one Party or a Participant in the context of a Cooperative Activity undertaken pursuant to this Agreement shall vest in that Party or Participant.</p> <p>4.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ed to inventions, discoveries and other science and technology achievements jointly developed solely by the Parties within the context of Cooperative Activities shall be allocated to each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oportions jointly decided by the Parties in writing.</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활동의 맥락에서 일방 당사국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개발된 지적재산권의 모든 권리는 당해 협정에 의하여 당사국이 소유하게 됨 • 기술 개발자 측에서 지식재산권을 소유함 • 공동의 성과에 대하여 기여정도를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을 분배함으로써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기여도에 따른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임 • 반면, 참여정도 또는 기여도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성과에 대한 귀속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

3) 활 용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서 조항(원문)</p>	<p>Article 11 - Intellectual Property</p> <p>3.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ny Intellectual Property it holds and that is necessary for the effective conduct of a Cooperative Activity by the other Party or its Participants, shall be made available to such Party or its Participants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Cooperative Activity. Each Party shall take reasonable measures to ensure that its Participants provide the Intellectual Property they hold, and that is necessary for the effective conduct of a Cooperative Activity, in the same manner. In any event, a Party or its Participants shall not be required to grant more than a licence to use such Intellectual Property for the conduct of the Cooperative Activity concerned. The Intellectual Property that is necessary for the conduct of a Cooperative Activity shall be specifically identified in the Implementing Arrangement or contract relating to such Cooperative Activity.</p> <p>5.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in writing in accordance with their domestic procedures, any Intellectual Property arising from the results of a Joint Research Activity shall be governed by the Annex on Intellectual Property Arising from the Results of Joint Research Activities, which forms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p>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의 당사자들은 협력활동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함 • 당사자들은 협력활동의 수행을 위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라이선스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필요는 없음 • 또한 협력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재산권은 실행협정이나 협력 활동과 관련한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함 • 공동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자간에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창출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라이선스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음으로써 지식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을 실행협정이나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함으로써 추진하는 개별연구에 대하여 탄력적인 성과의 귀속,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부속서는 당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협약과 대등한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지적재산권의 활용에 대하여는 부속서를 따르게 됨 •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같이 당사자에게 민감하고 개별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커서 이를 표준화시키기 용이하지 않을 경우, 전체 표준 계약서에서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별도의 부속서를 두는 방법이 적정할 수 있음
--	---

4) 부속 문서 (Annex)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Annex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ising from the Results of Joint Research Activities</p> <p>Article 2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ising from Joint Research Activities</p> <p>2. The Parties shall:</p> <p style="padding-left: 20px;">a. notify one another within a reasonable time of the creatio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ising from a Joint Research Activity undertaken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 shall, as appropriate, seek protection for su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in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s and pursuant to their domestic legislation; and</p> <p>5.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enerated by a Joint Research Activity, the allocation and acquisition of which has not been addressed in the TMP, shall be allocated, to the largest extent possible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set out in the relevant TMP¹⁴), as jointly decided in writing by the Participants.</p> <p>Article 3 - Publication of Research Results of a Joint Research Activity</p>

	<p>1.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2 of this Annex, and unless otherwise agreed in the TMP concerned, publication of results of a Joint Research Activity shall be effected jointly by the Parties or Participants in a Joint Research Activity.</p> <p>2. Subjec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following procedures shall apply:</p> <p>a. The Parties shall take reasonable measures to encourage the publication of literary works of a scientific character arising from a Joint Research Activity undertaken pursuant to this Agreement; and</p> <p>b.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all copies of a work that embodies the results of a Joint Research Activity, that is subject to copyright and that is distributed to the public, shall contain the names of the author(s) of the work unless an author explicitly declines to be named, as well as a clearly visible acknowledgement of the cooperative support of the Parties.</p>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연구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함을 규정 • 그리고 그들의 관할권과 국내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 • TMP를 통하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TMP규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동 연구 결과 발생한 소유권을 할당하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 • 상대방에 대한 통지규정을 둬으로써, 새로운 지식재산권 또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보호규정을 둬으로써 공동연구의 성과물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되는 것을 규정함 • 공동연구활동의 출판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검토나 승인규정을 두는 일반적인 경우를 고려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가. 계약서 일반사항

계약서명		技术开发合同(기술개발계약서)
계약 주체	주체 유형	대학 vs. 협력상대방
	당사자	북경대학교
계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 • 비용부담: 부담자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연구개발비를 기술 실시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규정만 제시 • 소유: 공동소유 • 활용: 규정 없음

나. 계약서 분석(비용·소유·활용)

1) 비 용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八、研究开发经费、报酬及其支付方式</p> <p>(一)本项目研究开发经费和报酬总额(大写): _____元。由甲方提供。</p> <p>(二)支付方式:按如下_____方式支付。</p> <p>①一次总付: _____元, 时间:</p> <p>②分期支付: _____元, 时间: _____元, 时间:</p> <p>③按利润额的_____ %提成, 期限: _____</p> <p> 结算办法:每_____ (时间) 结算一次, 于_____ (时间) 之前支付。</p> <p>④按销售额的_____ %提成, 期限: _____</p> <p> 结算办法:每_____ (时间) 结算一次, 于_____ (时间) 之前支付。</p>

	<p>⑤其它方式：</p> <p>(三) 双方确定，甲方以实施该项技术所产生的利益提成的，乙方有权查阅甲方有关的会计帐目。</p>
해석	<p>제8조 연구개발경비, 보수 및 지불방식</p> <p>8.1 본 프로젝트 연구개발 경비 및 보수 총액은(갖은자) _ _ _ 위안으로, 갑이 제공함</p> <p>8.2 지불방식 : 아래 _ _ _ _ 방식에 따라 지불함</p> <p>(1) 일회총지불방식: _____ 원, 시간: _____</p> <p>(2) 분할납부방식: _____ 원, 시간: _____</p> <p>(3) 이윤에서 ____ % 공제, 기한: _____</p> <p> 결산방법 : 매____(시간)마다 1회 결산, ____ (시간) 이전에 지불</p> <p>(4) 판매액에서 ____ % 공제, 기한: _____</p> <p> 결산방법 : 매____(시간)마다 1회 결산, ____ (시간) 이전에 지불</p> <p>(5) 기타 방식: _____</p> <p>8.3 갑이 본 항 기술을 실시하여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하기로 쌍방이 확정된 경우, 을은 갑의 관련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p>
분석	연구개발비를 기술 실시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2) 소 유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九、利用研究开发经费购置的设备、器材、资料等的财产权属：</p> <p> 利用研究开发经费、用于乙方进行技术设计和实验而购置的设备、器材和资料归乙方所有。</p> <p>(注：如为甲方代购设备，须写明代购设备及费用的具体信息)</p>
해석	<p>제9조 연구개발경비로 구입한 설비, 기자재, 자료 등의 재산소속</p> <p>연구개발에 이용한 경비, 을의 기술 설계와 실험을 위해 구입한 설비, 기자재와 자료는 을의 소유로 함</p> <p>(갑이 대리 구매한 설비일 경우, 대리 구매한 설비 및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p>
분석	연구개발경비로 구입한 설비, 기자재, 자료 등 재산에 대하여도 소유권 귀속에 대해서도 명확히 함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서 조항(원문)</p>	<p>十、技术成果的归属和分享</p> <p>(一) 知识产权归属：</p> <p style="padding-left: 2em;">甲乙双方共同享有本合同技术成果的知识产权。</p> <p>(二) 利用本合同项目成果进行后续改进和研发的新技术成果归属</p> <p style="padding-left: 2em;">甲方有权利用乙方按照本合同约定提供的研究开发成果，进行后续改进。由此产生的具有实质性或创造性技术进步特征的新的技术成果及其权利归属，由（甲、乙、双）方享有。</p> <p>具体相关利益的分配办法如下：_____。</p> <p style="padding-left: 2em;">乙方有权在完成本合同约定的研究开发工作后，利用该项研究开发成果进行后续改进。由此产生的具有实质性或创造性技术进步特征的新的技术成果，归____乙____（甲、乙、双）方所有。</p> <p style="padding-left: 2em;">由甲乙双方利用该项研究开发成果进行后续改进，共同完成的具有实质性或创造性技术进步特征的新的技术成果归甲乙双方共有。</p>
<p style="text-align: center;">해석</p>	<p>제10조 기술성과의 귀속 및 공유</p> <p>10.1 지식재산권 귀속:</p> <p style="padding-left: 2em;">갑을 쌍방은 본 계약 기술성과의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향유함</p> <p>10.2 본 계약 프로젝트 성과를 이용하여 후속개량 및 연구개발한 신기술 성과의 귀속</p> <p style="padding-left: 2em;">갑은 을이 본 계약 약정에 따라 제공하는 연구개발 성과를 이용하여 후속개량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실질적 혹은 창조적 기술 진보 특징을 지닌 신기술 성과 및 그 권리는 (갑, 을, 쌍방)측이 갖는다.</p> <p>구체적인 이익 분배 방법은 아래와 같다. _____.</p> <p style="padding-left: 2em;">을은 본 계약이 약정한 연구개발 업무를 완성한 후에, 본 프로젝트 연구개발 성과를 이용하여 후속 개량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실질적 혹은 창조적 기술 진보 특징을 지닌 신기술 성과 및 그 권리는 _을_(갑, 을, 쌍방)측이 갖는다.</p> <p style="padding-left: 2em;">갑을 쌍방이 본 프로젝트 연구개발 성과를 이용하여 후속 개량을 진행할 경우, 공동으로 완성시킨 실질적 혹은 창조적 기술 진보 특징을 지닌 신기술 성과는 갑을 쌍방이 공유함</p>

3) 활 용 - 해당없음

가. 계약서 일반사항¹⁵⁾

계약서명		技术开发合同(기술개발계약서)
계약 주체	주체 유형	-
	당사자	-
계약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 • 비용부담: 구체적인 규정 없음 • 소유: 연구성과물의 귀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연구과정 하에 발생한 재산에 대한 소유 규정을 명시함. 또한, 기술성과의 귀속에 대해서, 특허와 비 특허(영업비밀, 노하우)로 구분하여 정함 • 활용: 규정 없음

나. 계약서 분석(비용·소유·활용)

1) 비 용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9. 风险责任的承担：</p> <p>在履行本合同的过程中，确因在现有水平和条件以难以克服的技术困难，导致研究开发部分或全部失败所造成的损失，风险责任由 _ _ _ 承担。</p> <p>经约定，风险责任甲方承担 _ _ _ _ %</p> <p>乙方承担 _ _ _ _ %</p> <p>本项目风险责任确认的方式为：</p>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조 위험부담: <p>동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수준과 조건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어려움으로 연구개발의 부분 혹은 전부가 실패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손실, 위험부담은 _____측에서 부담함</p>

15)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참조

	<p>약정에 따라 위험책임은 갑이 _____ % 부담하고 을이 _____ % 부담함 본 항목의 위험부담 확인방식은 _____이다.</p>
분석	<p>• 미국의 경우와 달리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p>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p>4. 研究开发经费、报酬及其支付或结算方式： (1) 研究开发经费是指完成本项研究开发工作所需的成本；报酬是指本 项目 开发成果的使用费和研究开发人员的科研补贴； 本项目研究开发经费及报酬：_____元 其中：甲方提供_____元 如开发成果实报实销，双方约定如下：</p> <p>(2) 经费和报酬支付方式及时限： ①一次总付：_____元，时间：_____ ②分期支付：_____元，时间：_____ ③按利润：_____元，时间：_____ ④按销售额：_____ %提成，期限：_____ ⑤其它方式：</p>
해석	<p>제4조 연구개발경비, 보수 및 지급 혹은 결산방식 4.1 연구개발경비는 동 프로젝트의 연구개발업무에 필요한 자원을 가리키고, 보수는 동 프로젝트의 개발성과의 사용료와 연구개발인원 의 연구보조금을 가리킨다. 동 항목연구개발경비 및 보수는 _____원 그중 갑이 _____원을 제공함 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제상황대로 회계처리를 하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약정함</p> <p>4.2 경비와 보수지급방식 및 기한은 다음과 같다. 일회총지불방식: _____원, 시간: _____ 분할납부방식: _____원, 시간: _____ 이윤에서 _____ % 공제, 기한: _____ 판매액에서 _____ % 공제, 기한: _____ 기타 방식: _____</p>
분석	<p>• 일방당사자 측에서 공동연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 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기도 하나 당해 계약에서는 비용 제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p>

2) 소 유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5. 利用研究开发经费购置的设备、器材、资料的财产权属：
해석	제5조 연구개발경비로 구입한 설비, 기자재, 자료의 재산소속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경비로 구입한 설비, 기자재, 자료 등 재산에 대하여도 소유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공동연구과정에서 발생엔 재산에 대하여도 처분이 용이하도록 하는 장점

구 분	내 용
계약서 조항(원문)	10. 技术成果的归属和分享： (1) 专利申请权： (2) 非专利技术成果的使用权、转让权：
해석	제10조 기술성과의 귀속(歸屬): 10.1 특허신청권 10.2 비특허기술성과의 사용권, 양도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성과의 귀속에 대해서, 특허와 비 특허(영업비밀, 노하우)로 구분하여 정함

3) 활 용 - 해당없음

IV. 국제공동연구 법률 분석

1. 국가별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률 및 제도 목록

가. 한 국

구 분	법 규	소관부처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3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산업통상자원부
4	과학기술기본법	미래창조과학부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
6	협동연구개발촉진법	미래창조과학부
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미래창조과학부
8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미래창조과학부
9	국가정보화 기본법	미래창조과학부
1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
11	국제과학기술 협력규정(시행령(대통령령))	미래창조과학부
12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환경부
13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환경부
14	방위사업법(지식재산권 공유에 관한 것)	국방부
15	방위사업법 시행령	국방부
1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
17	암관리법	보건복지부
18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보건복지부
19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	해양수산부
20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¹⁶⁾ (국토교통부 훈령)	국토교통부
21	농림수산물식품과학 기술 육성법 ¹⁷⁾	농림축산식품부
22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 업무에 관한 운영규정 (농촌진흥청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3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교육부
24	국제공동연구 수행 관리규정	산림청

16) 종래에는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17)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미 국

구 분	법 규
1	베이돌법(Bayh-Dole Act)
2	스티븐슨-와이들러법 (Stevenson-Wydler Act)
3	연방기술이전법 (FTTA : 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4	국가경쟁력기술이전법 NCTTA (National Competitiveness Technology Transfer Act)
5	국가기술이전 및 발전법 NTTAA(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
6	기술이전사업화법 TTCA (Technology Transfer Commercialization Act of 2000)
7	행정명령 제12591호와 제12618호 (Executive Order 12591 and 12618, 1987)
8	미국 전체기술표준원권한부여법
9	연방연구과제공동협약법 (Federal 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 Act of 1977)
10	America COMPETES Act of 2007
11	국제과학기술협력법

다. 중 국

구 분	법 규
1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2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3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4	최고인민법원의 기술계약 분쟁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 ¹⁸⁾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技术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5	기술수출입계약 등록관리방법 (技术进出口合同登记管理办法)
6	중국 기술 수출입 제한/금지 목록

18) 장래 문제가 될 수 있는 조문의 해석을 최고인민법원이 규범성을 가지는 문서의 형태로 공포한 것으로 중국의 입법사상에 의해 채택된 중국만의 독특한 제도이다.

2.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률 비교 분석(비용·소유·활용 중심)

가. 한 국

법률 및 제도	비용	소유	활용	비고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	-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규정만 존재함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동운영 요령	연구사업비 관리 규정만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 국한된 것은 아니나,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대한 규정 보유하고 있음 •사업수행의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단,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수행의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함.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성과물의 개발에 있어서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공동연구만을 위한 규정은 아니나, 국가사업 하의 연구개발 성과물 소유 및 활용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경우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법률 및 제도	비용	소유	활용	비고
과학기술 기본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함 •단, 경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할 수 있음 •지식재산권 등의 설정 규정을 통한, 연구개발성과물 보호를 장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공동연구에 특화된 규정은 아님 •연구형태, 비중 등을 고려하여 연구기관 등의 소유됨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세부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연구개발 규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으로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공동연구지원에 대한 조항만 제시함
협동연구개발촉진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 우선지원 규정만을 명시함 •법 제정 목적에 외국 연구개발관련기관 사이의 협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함이라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규정만 제시함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을	•원칙적으로 주관	•주관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에 국한

법률 및 제도	비용	소유	활용	비고
개발 진흥법	위한 재원을 정부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규정	연구기관의 소유 •비용부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과의 공동소유를 인정함	장의 기술료 징수 권한을 규정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의 비밀 유지의무를 규정	된 조항은 아니나 시행령에서 국외 연구기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제공동연구에도 해당가능성 있음
국가 정보화 기본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 부과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해 이용을 원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국가연구 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성과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계획 마련 의무 규정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를 수행하게 하도록 함 •연구성과 사업화에 따른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시키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공동연구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연구개발비용은 아니나 성과 활용에 있어 비용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국제과학 기술협력 규정	-	-	•연구개발결과 등의 주요정보에 대한 보안조치의 수립·시행 의무	•국제공동연구사업 정의 및 추진규정을 명시하였으나, 국제공

법률 및 제도	비용	소유	활용	비고
				동연구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체의 국제적 사업에 대해 필요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	-	-	•국제공동연구 촉진에 대해 규정 •국제공동연구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음
환경기술 개발사업 운영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소유 •예외적으로 위탁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단독 소유도 가능하고 환경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공동소유가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부담금 없는 연구개발 결과로 나온 기술의 실시권은 전문기관이 소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장의 결과물 양여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안보, 공익적 목적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의 국외에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의 판단으로 국가 소유로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의 결과물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처분 권한 부여 •연구개발결과물 활용 촉진에 대해 규정 	

법률 및 제도	비용	소유	활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실시계약 미 체결된 과제에 대한 공개 활용 가능성 규정 •기술실시계약에 따른 기술료 산정 기준 규정 •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적용 	
방위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조 •방산업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보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이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가 혹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유로 할 수 있음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 참여기관은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위사업청장 또는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 소유 지식재산권에 대해 실시권 허락 권한 보유 •연구개발참여업체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실시권을 허락해야 함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기술의 기술료 징수 의무 규정 	-
방위사업법 시행령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공동연구개발업무 계약 이행을 감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법률 및 제도	비용	소유	활용	비고
				•국제공동연구 형태로 추진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기본전략 수립 의무 규정
보건의료 기술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 비로 충당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수행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과제 성과물로서 국가에 귀속된 산업재산권의 연구수행자 혹은 정부와의 공동투자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음 •연구 성과물의 활용에 대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일반적인 공동연구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규정 없음
암관리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명시 없음 •암 연구사업 추진 시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 공동연구 사업을 우선 지원할 것을 명시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사업 촉진
보건의료 기술연구 개발사업 관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적 연계·협력 장려 •보건복지부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연구개발 결과 	-	-

법률 및 제도	비용	소유	활용	비고
	<p>등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음</p> <p>•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p>	<p>로 얻은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p> <p>• 참여기관이 자체적·주도적으로 개발한 경우 단독 소유 가능</p> <p>•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는 것이 결과물 활용을 위해 더 효과적인 경우 공동소유 가능</p> <p>• 국가 안보, 공익적 목적, 연구기관의 국외 소재 등의 경우 결과물을 국가 소유로 할 수 있음</p>		
<p>해양수산 발전 기본법</p>	<p>•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국제공동연구 사업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음</p> <p>• 정부의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한 재정·금융지원 가능</p>	-	-	<p>• 국제공동연구 촉진에 관해 규정됨</p> <p>•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지원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의무 규정</p>

법률 및 제도	비용	소유	활용	비고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운영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약 체결시 우선적으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결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약 체결시 우선적으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성과의 등록 기탁에 관한 사항,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을 협약 체결시 우선적으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용이나 소유, 활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협약을 통해 정함 해당 운영규정에서는 협약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만을 규정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주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농촌진흥청 국제기술 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시 국제공동연구과제 국외 수행 필요 분야를 심의기준으로 삼음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의 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

나. 미 국

법률 및 제도	비용	소유	활용	비고
Bayh-Dole Act of 1980 (Public law 96-5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을 수행한 비영리기관(대학 포함)과 소기업이 발명에 대한 소유 선택권 보유 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기관이 소유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연방 정부가 발명을 소유할 수도 있고, 연방정부와 계약기관 간의 상의를 통하여 발명자가 보유할 수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권리를 계약기관이 소유하기로 선택한 경우, 미 연방기관은 그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받음 미 연방정부는 특정의 경우에 따라, 계약기관 외의 타 적합한 기관에게 통상 실시권, 부분 독점실시권, 독점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공동연구에 특화된 규정은 아님
연방 기술 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에 대한 자금부담은 협력자가 그 외의 자원부담은 협력자와 연방연구소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특허권 귀속은 '공동연구개발협정(CRADA)' 규정에 의함 정부연구기관의 장은 특허권을 협력단체에 허용할 수 있음 정부연구기관이 특허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공동연구 협력단체는 그에 대한 통상, 비이전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CRADA를 통해 수령한 기술료는 당해 발명을 개발한 연구소에 귀속함을 원칙 	-

법률 및 제도	비용	소유	활용	비고
		변경불가의 실시권을 가짐		
국가 경쟁력 기술 이전법 (NCT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주요한 기술개발에 관하여 승인이 가능한 비용의 규모가 결정되어 있음 • 공동연구참가에 관한 비용은 각 주체가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공유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개발에 투입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제3자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둠
국가 기술 이전 및 발전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은 공동연구자에게 본 계약에 따른 발명품에 대한 독점 실시권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보장함 • 만약 협력자가 다수인 경우, 그 다수의 협력자에게는 독점실시권이 아닌 라이선스 권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
기술 이전 사업화 법 (TTCA)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소유의 발명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부여함 • 라이선스는 공공의 효용증진이나 합리적이고 필요한 경우, 연방 	-

법률 및 제도	비용	소유	활용	비고
			<p>기구 소유로서 잠재적으로 미국내에서 제품화될 발명에 대하여 부여</p> <p>• 연방정부가 소유하게 된 발명, 연구소가 이미 존재하는 정부의 발명을 발명을 실시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연방정부 기관에 부여</p>	
연방 연구 과제 공동협약 법	<p>• 연구비 지급 기관은 연구수행에 개입하지 않지만 연구비 사용실적은 연방의 연구 과제 관리시스템인 'fastline'을 통해 관리함</p>	-	-	-
America COMPETES Act of 2007	<p>• 연구사업(TIP)에 대한 정부 자원 지급에 대한 일반 규정 제시</p>	<p>• 합작사업의 경우, 참여기관들의 합의에 따라, 참여 기관이 소유할 수 있음</p>	<p>• 미국은 무상의 통상실시권 보유</p>	<p>• TIP 참여자격은 미국시민권자, 미국소재지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이나, 외국 기업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미국 외 제3국의 합작 연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됨</p>

다. 중 국

법률 및 제도	비용	소유	활용	비고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약정에 따라 연구개발 경비 및 보수 지불	•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권은 연구개발자에게 귀속 • 합작 개발로 완성한 발명 역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권은 쌍방 당사자가 공유	• 연구개발자가 특허권을 취득할 경우 위탁자가 무상으로 실시 가능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	-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	-	-	-
최고인민법원의 기술계약 분쟁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 ¹⁹⁾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技术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	-	-	-
기술수출입계약 등록관리방법 (技术进出口合同登记管理办法)	-	-	-	-

19) 장래 문제가 될 수 있는 조문의 해석을 최고인민법원이 규범성을 가지는 문서의 형태로 공포한 것으로 중국의 입법사상에 의해 채택된 중국만의 독특한 제도이다.